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FATF 권고사항

**THE FATF RECOMMENDATIONS**

**February 2012**

## FATF 권고사항

Number	Old number		
		<b>A – AML/CFT 정책과 조정</b>	<b>A – AML/CFT POLICIES AND COORDINATION</b>
1	-	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의 적용 *	Assessing risks & applying a risk-based approach *
2	R.31	국가적 협력과 조정	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B –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b>	<b>B – MONEY LAUNDERING AND CONFISCATION</b>
3	R.1&R.2	자금세탁 범죄 *	Money laundering offence *
4	R.3	몰수와 잠정조치 *	Confisca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
		<b>C –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b>	<b>C –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NG OF PROLIFERATION</b>
5	SRII	테러자금조달 범죄 *	Terrorist financing offence *
6	SRIII	테러 ·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terrorism & terrorist financing *
7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
8	SRVIII	비영리조직 *	Non-profit organisations *
		<b>D – 예방조치</b>	<b>D – PREVENTIVE MEASURES</b>
9	R.4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법률 <i>고객확인제도와 기록보관</i>	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s <i>Customer due diligence and record keeping</i>
10	R.5	고객확인제도 (CDD) *	Customer due diligence *
11	R.10	기록보관 <i>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i>	Record keeping <i>Additional measures for specific customers and activities</i>
12	R.6	고위공직자 (정치적 주요인물) *	Politically exposed persons *
13	R.7	환거래은행 *	Correspondent banking *
14	SRVI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15	R.8	새로운 기법	New technologies
16	SRVII	전신송금 * <i>의존, 통제와 금융그룹</i>	Wire transfers * <i>Reliance, Controls and Financial Groups</i>
17	R.9	제 3 자 의존 *	Reliance on third parties *
18	R.15&R.22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	Internal controls and foreign branches and subsidiaries *
19	R.21	고위험 국가 * <i>의심거래의 보고</i>	Higher-risk countries * <i>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i>
20	R.13&SRIV	의심거래 보고 *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
21	R.14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Tipping-off and confidentiality

		<b>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직</b>	<b>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DNFBPs)</b>
22	R.12	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직: 고객확인*	DNFBPs: Customer due diligence *
23	R.16	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직: 기타 수단 *	DNFBPs: Other measures *
<b>E –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b>			<b>E –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b>
24	R.33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
25	R.34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arrangements *
<b>F –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기타 제도적 조치</b>			<b>F –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OTHER INSTITUTIONAL MEASURES</b>
		<b>규제와 감독</b>	<b>Regulation and Supervision</b>
26	R.2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27	R.29	감독기관의 권한	Powers of supervisors
28	R.24	특정 비금융사업자. 전문직에 대한 규제와 감독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DNFBPs
		<b>운영과 법 집행</b>	<b>Operational and Law Enforcement</b>
29	R.26	금융정보분석원 *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
30	R.27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	Responsibilities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
31	R.28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Powers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32	SRIX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	Cash couriers *
		<b>일반적 요건</b>	<b>General Requirements</b>
33	R.32	통계	Statistics
34	R.25	지침과 피드백	Guidance and feedback
		<b>제재</b>	<b>Sanctions</b>
35	R.17	제재	Sanctions
<b>G – 국제협력</b>			<b>G – INTERNATIONAL COOPERATION</b>
36	R.35&SRI	국제협약의 이행	International instruments
37	R.36&SRV	국제사법공조	Mutual legal assistance
38	R.38	국제사법공조: 동결과 몰수 *	Mutual legal assistance: freezing and confiscation*
39	R.39	범죄인 송환	Extradition
40	R.40	기타 국제협력 *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 A. AML/CFT 정책과 조정

### 1. 위험 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각국은 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 평가 및 이해하여야 하며,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위험평가를 총괄(coordinate)할 당국 혹은 메커니즘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action)를 취하고 재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국은 그 위험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도록 하는 위험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접근법은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FATF 권고사항을 위험수준에 따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틀이 되어야 한다.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된 경우, 각국은 자국의 AML/CFT 체제가 해당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낮은 위험이 확인된 경우, 각국은 특정 조건 하에서 FATF 권고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간소화된 조치를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각국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DNFBP)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2. 국가적 협력과 조정

각국은 확인된 위험이 참고 된 국가적 AML/CFT 정책을 가져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을 지정하거나, 총괄체계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각국은 정책입안자, FIU, 법집행기관, 감시감독관 그리고 정책의 입안 및 운영을 책임지는 기타 관련 권한당국이 협력할 수도 있도록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정책과 활동 개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이 국내적으로 상호협력(co-ordinate)하도록 하여야 한다.

## A. AML/CFT POLICIES AND COORDINATION

### 1. Assessing risks and applying a risk-based approach\*

Countries should identify, assess, and understand th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for the country, and should take action, including designating an authority or mechanism to coordinate actions to assess risks, and apply resources, aimed at ensuring the risks are mitigated effectively. Based on that assessment, countries should apply a risk-based approach (RBA) to ensure that measures to prevent or mitigat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re commensurate with the risks identified. This approach should be an essential foundation 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cross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CFT) regime and the implementation of risk-based measures throughout the FATF Recommendations. Where countries identify higher risks, they should ensure that their AML/CFT regime adequately addresses such risks. Where countries identify lower risks, they may decide to allow simplified measures for some of the FATF Recommenda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Countries should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DNFBPs) to identify, assess and take effective action to mitigate their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 2. 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ountries should have national AML/CFT policies, informed by the risks identified, which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should designate an authority or have a coordination or other mechanism that is responsible for such policie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policy-makers,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upervisors and other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at the policymaking and operational levels, have effective mechanisms in place which enable them to cooperate, and, where appropriate, coordinate domestically with each other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activities to combat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he financing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B.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

### 3. 자금세탁 범죄\*

각국은 비엔나 협약과 팔레모 협약에 기초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화 하여야 한다. 각국은 전제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목적으로, 모든 중대범죄에 자금세탁 범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 4. 몰수와 잠정조치\*

각국은 비엔나 협약, 팔레모 협약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협약에 명시된 조치와 유사한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권한당국이 선의의 제 3 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음 명시된 사항을 동결이나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세탁된 재산, (b) 자금세탁 혹은 전제범죄의 범죄수익, 또는 해당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인 수단, (c) 테러리즘, 테러행위 혹은 테러조직의 범죄수익 또는 이들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인, 또는 사용을 위해 할당된 재산 또는 (d) 이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재산.

해당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몰수 대상 재산을 확인, 추적, 평가할 권한, (b) 해당 재산의 거래, 이전 또는 처분을 막기 위하여 동결 및 압수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 (c) 몰수대상 재산을 국가가 동결, 압수 혹은 회복할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 혹은 무효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할 권한과 (d) 적절한 수사권한.

각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범죄수익, 범죄수단 등을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기소전몰수제도)나, 범죄자에게 몰수 대상 재산의 정당한 원천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조치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B. MONEY LAUNDERING AND CONFISCATION

### 3. Money laundering offence\*

Countries should criminalise money laundering on the basis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lermo Convention. Countries should apply the crime of money laundering to all serious offences, with a view to including the widest range of predicate offences.

### 4. Confisca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Countries should adopt measures similar to those set forth in the Vienna Convention, the Palermo Convention, and the Terrorist Financing Convention, including legislative measures, to enable their competent authorities to freeze or seize and confiscate the following, without prejudicing the righ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a) property laundered, (b) proceeds from, or instrumentalities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money laundering or predicate offences, (c) property that is the proceeds of, or used in, or intended or allocated for use in, the financing of terrorism, terrorist acts or terrorist organisations, or (d) property of corresponding value.

Such measures should include the authority to: (a) identify, trace and evaluate property that is subject to confiscation; (b) carry out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freezing and seizing, to prevent any dealing, transfer or disposal of such property; (c) take steps that will prevent or void actions that prejudice the country's ability to freeze or seize or recover property that is subject to confiscation; and (d) take any appropriate investigative measures.

Countries should consider adopting measures that allow such proceeds or instrumentalities to be confiscated without requiring a criminal conviction (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or which require an offender to demonstrate the lawful origin of the property alleged to be liable to confisc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a requiremen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ir domestic law.

## C.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 5. 테러자금조달 범죄\*

각국은 테러자금조달금지 협약에 의거하여 테러자금조달을 범죄화하여야 하며,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특정 테러행위(들)와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테러조직과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조달도 범죄화하여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각국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각국은 (i) S/RES/1267(1999)과 그 이후 채택된 결의안 등 유엔 헌장 제 VII 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나 유엔 안보리의 권한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ii) S/RES/1373(2001)에 따라 각국이 지정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하여야 하고,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혹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떠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각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조달을 방지, 억제 및 방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결의안에 따라 각국은 유엔 헌장 제 VII 장에 의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또는 그 권한에 의하여 지정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하여야 하고,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혹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떠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C. TERRORIST FINANCING AND FINANCING OF PROLIFERATION

### 5. Terrorist financing offence \*

Countries should criminalise terrorist financing on the basis of the Terrorist Financing Convention, and should criminalise not only the financing of terrorist acts but also the financing of terrorist organisations and individual terrorists even in the absence of a link to a specific terrorist act or act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such offences are designated as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 6.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terrorism and terrorist financing \*

Countries should implement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gimes to comply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financing. The resolutions require countries to freeze without delay the funds or other assets of, and to ensure that no funds or other assets are made avail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r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or entity either (i) designat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1267 (1999) and its successor resolutions; or (ii) designated by that country pursuant to resolution 1373 (2001).

### 7.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Countries should implement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to comply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ing to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disruption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financing. These resolutions require countries to freeze without delay the funds or other assets of, and to ensure that no funds and other assets are made avail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r for the benefit of, any person or entity designat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8. 비영리조직\*

각국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수 있는 단체와 관련된 법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이 특히 취약한바, 각국은 비영리조직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a) 테러조직을 합법적 단체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
- (b) 자산동결조치를 회피하는 목적 등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단체로서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 (c) 테러조직의 자금을 합법적 목적에 사용될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감추거나 은폐하기 위해 수단

## 8. Non-profit organisations \*

Countries should review the adequacy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relate to entities that can be abused for the financing of terrorism. Non-profit organisation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y cannot be misused:

- (a) by terrorist organisations posing as legitimate entities;
- (b) to exploit legitimate entities as conduits for terrorist financing, including for the purpose of escaping asset-freezing measures; and
- (c) to conceal or obscure the clandestine diversion of funds intended for legitimate purposes to terrorist organisations.

## D. 예방조치

### 9.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법률

각국은 금융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s)이 FATF 권고사항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객확인 의무와 기록보관

### 10. 고객확인제도 (CDD)\*

금융기관의 익명 또는 가명계좌 개설은 금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 (i) 거래관계(business relation)를 수립하는 경우
- (ii) 다음과 같은 일회성 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 (i) 기준금액(USD/EUR 15,000) 이상의 거래, 또는
  - (ii) 권고사항 16의 주석서에 의해 규제되는 전신송금
- (iii)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 (iv) 금융기관이 기존에 확보된 고객확인정보의 진위나 타당성을 의심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CDD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각국은 법률이나 강제력이 있는 수단중, 개별 고객확인 의무를 어떻게 부과할지 결정할 수 있다.

CDD 조치는 다음과 같이 행해져야 한다:

- (a) 신뢰성 있고 독립적인 문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인하고 고객의 신원을 검증할 것
- (b)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법인 및 법률관계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 함.
- (c)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 시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것
- (d)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고객확인 절차 이행 및 거래관계 수립 이후 실시된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하여 고객, 고객의 사업 및 위험기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 D. PREVENTIVE MEASURES

### 9. 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s do not inhibit implementation of the FATF Recommendations.

### CUSTOMER DUE DILIGENCE AND RECORD-KEEPING

### 10. Customer due diligence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prohibited from keeping anonymous accounts or accounts in obviously fictitious name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undertake customer due diligence (CDD) measures when:

- (i) establishing business relations;
- (ii) carrying out occasional transactions: (i) above the applicable designated threshold (USD/EUR 15,000); or (ii) that are wire transfers in the circumstances covered by the Interpretive Note to Recommendation 16;
- (iii) there is a suspicion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or
- (iv)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doubts about the veracity or adequacy of previously obtained customer identification data.

The princip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duct CDD should be set out in law. Each country may determine how it imposes specific CDD obligations, either through law or enforceable means.

The CDD measures to be taken are as follows:  
(a) Identifying the customer and verifying that customer's identity using reliable, independent source documents, data or information.

(b) Identifying the beneficial owner, and taking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beneficial owner, such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satisfied that it knows who the beneficial owner is. For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this should include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e ownership and control structure of the customer.

(c) Understanding and, as appropriate, obtaining information on the purpose and intended nature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d) Conducting ongoing due diligence on the business relationship and scrutiny of transactions undertaken throughout the course of that relationship to ensure that the transactions being conducted are consistent with the institution's knowledge of the customer, their business and risk profile, including, where necessary, the source of funds.

금융기관은 (a)-(d)의 모든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본 권고사항에 대한 주석서와 권고사항 1(위험기반 접근법)에 대한 주석서에 따라 위험중심 접근법을 적용하여 해당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전 또는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또는 일회성 거래행위의 수행 이전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이 거래관계 수립 후 합리적으로 수행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검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위의 (a)-(d)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위험중심 접근법에 따라 적용범위가 적절하게 조절 가능) 계좌개설, 거래관계수립 또는 거래이행을 하지 않도록 요구되고, 이미 수립된 거래관계는 종료하도록 요구되며,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권고사항은 모든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기존고객에게도 중요성과 위험성에 비례하여 본 권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 11. 기록보관

금융기관은 권한당국의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거래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기록은 범죄행위를 기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로 제시될 수 있도록 개별 거래내역(관련 금액과 통화 종류 등 포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수행(예를 들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한 모든 분석결과를 포함한 고객확인 조치를 통해 입수한 모든 고객확인 정보(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등 공식적인 신원 확인 서류의 사본 또는 기록), 계좌파일, 업무서신 등에 관한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또는 일회성 거래의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보존하도록 요구된다.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apply each of the CDD measures under (a) to (d) above, but should determine the extent of such measures using a risk-based approach (RBA)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ive Notes to this Recommendation and to Recommendation 1.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verify the identity of the customer and beneficial owner before or during the course of establishing a business relationship or conducting transactions for occasional customers. Countries may permit financial institutions to complete the verification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where th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isks are effectively managed and where this is essential not to interrupt the normal conduct of business.

Where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unable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under paragraphs (a) to (d) above (subject to appropriate modification of the extent of the measures on a risk-based approach), it should be required not to open the account, commence business relations or perform the transaction; or should be required to terminate the business relationship; and should consider making a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in relation to the customer.

These requirements should apply to all new customers, although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lso apply this Recommendation to existing customers on the basis of materiality and risk, and should conduct due diligence on such existing relationships at appropriate times.

## 11. Record-keeping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maintain, for at least five years, all necessary records on transaction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enable them to comply swiftly with information requests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Such records must be sufficient to permit reconstruction of individual transactions (including the amounts and types of currency involved, if any) so as to provide, if necessary, evidence for prosecution of criminal activity.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keep all records obtained through CDD measures (e.g. copies or records of official identification documents like passports, identity cards, driving licences or similar documents), account files and business correspondence, including the results of any analysis undertaken (e.g. inquiries to establish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complex, unusual large transactions), for at least five years after the business relationship is ended, or after the date of the occasional transaction.

금융기관은 법에 의해 거래에 대한 기록과 CDD 조치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요구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내 권한당국은 CDD 정보 및 거래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

### 12. 고위공직자 (정치적 주요인물)\*

금융기관은 외국 고위공직자(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고객이건 실소유자이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객확인 절차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 (a) 고객 또는 실소유자의 고위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 관리 시스템 운용
- (b) 이러한 거래관계를 수립하기 위한(기존 고객인 경우 이러한 거래관계를 지속하여도 된다는) 고위 관리자의 승인취득
- (c) 재산 및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 (d) 거래관계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수행

금융기관은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국내 고위공직자이거나 국제기구의 요직에 재임 중인 또는 재임한 개인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인과 고위험의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b), (c) 및 (d)의 조항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종류의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그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측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13. 환거래은행\*

금융기관은 국경 간 환거래계약(cross-border correspondent banking)과 기타 유사한 거래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객확인 조치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 (a) 요청 금융기관(respondent institution)의 사업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기관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규제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기관의 평판과 감독의 질을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수집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by law to maintain records on transactions and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e CDD measures.

The CDD information and the transaction records should be available to domestic competent authorities upon appropriate authority.

## ADDITIONAL MEASURES FOR SPECIFIC CUSTOMERS AND ACTIVITIES

### 12. Politically exposed persons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in relation to foreign 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whether as customer or beneficial owner), in addition to performing normal customer due diligence measures, to:

- (a) have appropriate risk-management systems to determine whether the customer or the beneficial owner is a politically exposed person;
- (b) obtain senior management approval for establishing (or continuing, for existing customers) such business relationships;
- (c) take reasonable measures to establish the source of wealth and source of funds; and
- (d) conduct enhanced ongoing monitoring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determine whether a customer or beneficial owner is a domestic PEP or a person who is or has been entrusted with a prominent function by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In cases of a higher risk business relationship with such person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b), (c) and (d).

The requirements for all types of PEP should also apply to family members or close associates of such PEPs.

### 13. Politically exposed persons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in relation to cross-border correspondent banking and other similar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performing normal customer due diligence measures, to:

- (a) gather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a respondent institution to understand fully the nature of the respondent's business and to determine from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the reputation of the institution and the quality of supervision, including whether it has been subject to a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investigation or regulatory action;

- (b) 요청 금융기관의 AML/CFT 조치를 평가
  - (c) 새로운 환거래 계약을 수립하기 전 고위 관리자의 승인취득
  - (d) 각 기관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이해
  - (e) 대리지불계좌의 경우, 요청 은행이 환거래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환거래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고객에 관한 적절한 고객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충족시켜야 함
- 금융기관은 위장은행과 환거래계약 관계를 맺거나 지속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요청기관이 위장은행에서 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요구된다.

- (b) assess the respondent institution's AML/CFT controls;
  - (c) obtain approval from senior management before establishing new correspondent relationships;
  - (d) clearly understand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each institution; and
  - (e) with respect to "payable-through accounts", be satisfied that the respondent bank has conducted CDD on the customers having direct access to accounts of the correspondent bank, and that it is able to provide relevant CDD information upon request to the correspondent bank.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prohibited from entering into, or continuing, a 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with shell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satisfy themselves that respondent institutions do not permit their accounts to be used by shell banks.

## 14.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각국은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MVTS)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인가 또는 등록이 되어있고 FATF 권고사항에 촉구되어 있는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지 감독 받고 확인 받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체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인가를 받지 않은 또는 미등록인 개인이나 법인이 MVTS 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 역시 권한당국에 의해 인가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면, MVTS 제공자는 MVTS 제공자와 대리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권한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대리인 목록을 보유해야 한다. 각국은 대리인을 이용하는 MVTS 제공자들이 대리인을 AML/CFT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모니터 해야 한다.

## 15. 새로운 기법

각국과 금융기관들은 (a)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신규 업무 취급 그리고 이들이 제공되는 방법과 (b) 신규 및 기존 금융상품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또는 개발되고 있는 금융기법의 사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업무취급 혹은 금융기법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확인된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4.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Countri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provide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s (MVTS) are licensed or registered, and subject to effective systems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measures called for in the FATF Recommendations. Countries should take action to identify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carry out MVTS without a license or registration, and to apply appropriate sanctio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orking as an agent should also be licensed or register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the MVTS provider should maintain a current list of its agents accessible by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countries in which the MVTS provider and its agents operate. Countri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MVTS providers that use agents include them in their AML/CFT programmes and monitor them for compliance with these programmes.

## 15. New technologies

Countr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identify and assess the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risk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a)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new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new delivery mechanisms, and (b) the use of new or developing technologies for both new and pre-existing products. In the case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 risk assessment should take place prior to the launch of the new products, business practices or the use of new or developing technologies. They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anage and mitigate those risks.

## 16. 전신송금\*

각국은 금융기관이 전신송금 및 관련 메시지에, 요구된 그리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요구된 수혜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정보는 일련의 지급·결제 과정 내내 전신송금 혹은 관련 메시지와 함께 기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금융기관이 요구된 송금인 그리고/혹은 수취인 정보를 결여한 전신송금을 탐지하기 위하여 전신송금을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테러행위 및 테러자금조달의 방지 및 억제와 관련된 S/RES/1267(1999) 및 후속 결의안과 S/RES/1373(2001)과 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각각의 의무사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전신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 의존, 통제와 금융그룹

### 17. 제 3 자 의존\*

각국은 아래에 제시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고객확인 조치의 (a)-(c)의 조항을 행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개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탁이 허용된 경우, 고객확인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제 3 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있다.

충족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제 3 자에게 고객확인을 위탁한 금융기관은 권고사항 10 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확인 조치 중 (a)-(c)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정보를 즉시 획득하여야 한다.
- (b) 금융기관은 제 3 자에게 고객확인 정보의 복사본과 기타 고객확인 수행과 관련된 문서를 요구 시, 이를 지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수준의 조치를 적절히 취하여야 한다.
- (c) 금융기관은 제 3 자가 (감독당국의)규제, 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받으며, 권고사항 10 과 11 에 따른 고객확인과 기록보존 의무에 준수하는 조치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satisfy itself) 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 16. Wire transfers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e required and accurate originator information, and required beneficiary information, on wire transfers and related messages, and that the information remains with the wire transfer or related message throughout the payment chain.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monitor wire transfers for the purpose of detecting those which lack required originator and/or beneficiary information,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in the context of processing wire transfers, financial institutions take freezing action and should prohibit conducting transactions with designated persons and entities, as per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uch as resolution 1267 (1999) and its successor resolutions, and resolution 1373(2001), relating to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financing.

## RELIANCE, CONTROLS AND FINANCIAL GROUPS

### 17. Reliance on third parties \*

Countries may permit financial institutions to rely on third parties to perform elements (a)-(c) of the CDD measures set out in Recommendation 10 or to introduce business, provided that the criteria set out below are met. Where such reliance is permitted,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CDD measures remains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relying on the third party.

The criteria that should be met are as follows:

- (a) A financial institution relying upon a third party should immediately obtain the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elements (a)-(c) of the CDD measures set out in Recommendation 10.
- (b)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take adequate steps to satisfy themselves that copies of identification data and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CDD requirements will be made available from the third party upon request without delay.
- (c) The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satisfy itself that the third party is regulated, supervised or monitored for, and has measures in place for compliance with, CDD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in line with Recommendations 10 and 11.

(d) 조건을 충족하는 제 3 자가 소재할 수 있는 국가를 결정할 때 각국은 해당 국가의 위험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고객확인을 위탁 받는 제 3 자가 같은 금융그룹의 계열사이고, (i) 해당 금융그룹이 권고사항 10, 11, 12 에 따른 고객확인과 기록보존의무 및 권고사항 18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ii) 고객확인과 기록보존의무 및 AML/CFT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이 전그룹 차원으로 권한당국의 감독 받고 있다면, 관련 권한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그룹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b)와 (c)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높은 국가적 위험이 금융그룹의 AML/CFT 정책으로 적절하게 경감되는 경우 기준 (d)는 위탁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d) When determining in which countries the third party that meets the conditions can be based, countries should have regard to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level of country risk.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relies on a third party that is part of the same financial group, and (i) that group applies CDD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in line with Recommendations 10, 11 and 12, and programm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8; and (ii) whe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ose CDD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and AML/CFT programmes is supervised at a group level by a competent authority, then relevant competent authorities may consider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applies measures under (b) and (c) above through its group programme, and may decide that (d) is not a necessary precondition to reliance when higher country risk is adequately mitigated by the group AML/CFT policies.

## 18.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AML/CFT 목적을 위한 그룹 내 정보 공유정책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AML/CFT 조치와 일관된 조치를 금융그룹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지점과 지배지분 보유 자회사에 적용할 의무가 있다.

## 18. Internal controls and foreign branches and subsidiaries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implement programm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Financial groups should be required to implement group-wide programm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cluding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haring information within the group for AML/CFT purpose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ensure that their foreign branches and majority-owned subsidiaries apply AML/CFT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home country requirements implementing the FATF Recommendations through the financial groups' programm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 19. 고위험 국가\*

금융기관은 FATF 가 촉구한 국가의 개인, 법인과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및 거래활동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적용될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는 위험도에 효과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각국은 FATF 의 촉구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국은 FATF 와 별도로 자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응조치는 위험도에 비례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 19. Higher-risk countries \*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required to apply enhanced due diligence measures to business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with natural and legal pers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from countries for which this is called for by the FATF. The type of enhanced due diligence measures applied should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Countries should be able to apply appropriate countermeasures when called upon to do so by the FATF. Countries should also be able to apply countermeasures independently of any call by the FATF to do so. Such countermeasures should be effective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 의심거래의 보고

### 20. 의심거래 보고\*

금융기관은 자금이 범죄수익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의심할만한 합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그 의심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21.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이사, 임원 (officers) 및 직원은:

- (a) 선의에 의하여(in good faith) FIU 에 의심거래보고를 한 경우, 비록 그 전제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 및 불법행위가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나 그 어떠한 법률, 규정 또는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부과된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위배하더라도 형사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의심거래보고 또는 관련 정보가 FIU 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공개(disclosing, 소위 "누설(tipping-off)")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DNFBPs)

### 22.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 고객확인제도\*

권고사항 10, 11, 12, 15, 17 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의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에게 적용된다.

- (a) 카지노에서 고객이 기준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행하는 경우
- (b)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 (c) 귀금속상이 고객과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 (d)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
  - 고객의 자금·증권 또는 기타 자산의 관리
  - 은행 예금·적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의 관리

##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 20.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If a financial institution suspects or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funds are the proceeds of a criminal activity, or are related to terrorist financing, it should be required, by law, to report promptly its suspicions to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 21. Tipping-off and confidentiality

Financial institutions, their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should be:

- (a) protected by law from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breach of any restriction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imposed by contract or by any legislative, regulatory or administrative provision, if they report their suspicions in good faith to the FIU, even if they did not know precisely what the underlying criminal activity was, and regardless of whether illegal activity actually occurred; and
- (b) prohibited by law from disclosing ("tipping-off") the fact that a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or related information is being filed with the FIU.

##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 22. DNFBPs: customer due diligence \*

The customer due diligence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set out in Recommendations 10, 11, 12, 15, and 17, apply to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DNFBPs)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a) Casinos- when customers engage in financial transactions equal to or above the applicable designated threshold.
- (b) Real estate agents- when they are involved in transactions for their client concerning the buying and selling of real estate.
- (c) Dealers in precious metals and dealers in precious stones- when they engage in any cash transaction with a customer equal to or above the applicable designated threshold.
- (d) Lawyers, notaries, other independent legal professionals and accountants- when they prepare for or carry out transactions for their client concerning the following activities:
  - buying and selling of real estate;
  - managing of client money, securities or other assets;
  - management of bank, savings or securities accounts;

- 회사 설립, 경영, 관리에 대한 기여를 조직화
  - 법인 또는 법률관계의 설립·운영·관리 및 사업체의 매매
- (e) 신탁 및 회사설립전문가가 고객을 위하여 다음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 법인의 설립 에이전트 역할 수행
  - 기업의 이사 또는 비서, 동업기업의 파트너, 혹은 기타 법인의 유사한 직책의 역할 수행 (또는 타인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사업장, 영업소 주소 또는 시설, 기업·동업기업 또는 기타 법인이나 법률관계를 위한 서신주소 또는 행정주소를 제공
  - 명시신탁 관리인 또는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동등한 역할 수행 (또는 타인이 수행하도록 함)
  - 타인을 대신하여 차명주주 역할 수행 (또는 타인이 수행하도록 함)

- organisation of contributions for the creation, operation or management of companies;
  - creation, operation or management of legal persons or arrangements, and buying and selling of business entities.
- (e)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 when they prepare for or carry out transactions for a client concerning the following activities:
- acting as a formation agent of legal persons;
  - acting as (or arranging for another person to act as) a director or secretary of a company, a partner of a partnership, or a similar position in relation to other legal persons;
  - providing a registered office, business address or accommodation, correspondence or administrative address for a company, a partnership or any other legal person or arrangement;
  - acting as (or arranging for another person to act as) a trustee of an express trust or performing the equivalent function for another form of legal arrangement;
  - acting as (or arranging for another person to act as) a nominee shareholder for another person.

### 23.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 기타 수단\*

권고사항 18-21 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모든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에게 적용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a)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는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권고사항 22(d)에 명시된 활동과 관계된 금융거래를 행하는 경우(engaged in)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각국은 회계감사업무와 같은 회계사의 기타 직무활동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확대할 것이 권고된다.
- (b) 귀금속상은 고객과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행하는 경우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c) 신탁 및 회사설립 전문가는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권고사항 22(e)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거래를 행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23. DNFBPs: Other measures \*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commendations 18 to 21 apply to all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subject to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a) Lawyers, notaries, other independent legal professionals and accountant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when, on behalf of or for a client, they engage in a financial transaction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described in paragraph (d) of Recommendation 22. Countries are strongly encouraged to extend the reporting requirement to the rest of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accountants, including auditing.
- (b) Dealers in precious metals and dealers in precious stone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when they engage in any cash transaction with a customer equal to or above the applicable designated threshold.
- (c) 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for a client when, on behalf of or for a client, they engage in a transaction in relation to the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e) of Recommendation 22.

## E.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 24.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각국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법인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국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한 정보를 권한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입수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무기명 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증서, 또는 명목 주주나 명목이사를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들은 해당 법인들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10 과 22 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마련을 고려하여야 한다.

### 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각국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법률관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설정자, 수탁자, 수혜자 정보 등 신탁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며 시의 적절한 정보를 권한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입수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10 과 22 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도 실소유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마련을 고려하여야 한다.

## E.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AND ARRANGEMENTS

### 24.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persons \*

Countries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misuse of legal persons for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re is adequat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beneficial ownership and control of legal persons that can be obtained or accessed in a timely fashion by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countries that have legal persons that are able to issue bearer shares or bearer share warrants, or which allow nominee shareholders or nominee directors, should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misused for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Countries should consider measures to facilitate access to beneficial ownership and control inform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DNFBPs undertaking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commendations 10 and 22.

### 25.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of legal arrangements \*

Countries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misuse of legal arrangements for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In particular,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re is adequat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on express trust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settlor, trustee and beneficiaries, that can be obtained or accessed in a timely fashion by competent authorities. Countries should consider measures to facilitate access to beneficial ownership and control informa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DNFBPs undertaking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commendations 10 and 22.

## F.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타 제도적 조치

### 규제와 감독

#### 26.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각국은 금융기관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며 FATF 권고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당국은 범죄자나 그 관련자가 금융기관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또는 지배지분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실소유자가 되는 것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국은 위장은행의 설립 혹은 운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원칙을 적용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을 목적으로 적용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도 관련 있는 규제와 감독조치를 AML/CFT 목적을 위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는 AML/CFT 목적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사와 지점, 자회사에 대한 통합적 그룹 감시와 고객확인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의 금융기관은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관련 분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AML/CFT 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혹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자금 또는 가치 이전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전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국가적 AML/CFT 의무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27. 검사자의 권한

감독기관은 검사권한 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또는 모니터링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AML/CFT 의무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항 35 에 의거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감독기관은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과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금융기관의 사업허가를 취소,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 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OTHER INSTITUTIONAL MEASURES

### REGULATION AND SUPERVISION

#### 26.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bject to adequate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are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FATF Recommendations. Competent authorities or financial supervisors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or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or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in, a financial institution. Countries should not approve the establishment, or continued operation, of shell banks.

For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the Core Principles,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measures that apply for prudential purposes, and which are also relevant to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should apply in a similar manner for AML/CFT purposes. This should include applying consolidated group supervision for AML/CFT purpose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licensed or registered and adequately regulated, and subject to supervision or monitoring for AML/CFT purposes, having regard to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in that sector. At a minimum,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a service of money or value transfer, or of money or currency changing, they should be licensed or registered, and subject to effective systems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national AML/CFT requirements.

#### 27. Powers of supervisors

Supervisors should have adequate powers to supervise or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quirement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cluding the authority to conduct inspections. They should be authorised to compel production of any informa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hat is relevant to monitoring such compliance, and to impose sanctions, in line with Recommendation 35, for failure to comply with such requirements. Supervisors should have powers to impose a range of disciplinary and financial sanctions, including the power to withdraw, restrict or suspe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license, where applicable.

## 28.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에 대한 규정과 감독\*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은 다음 명시된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적용 받아야 한다.

- (a) 카지노는 필수적인 AML/CFT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규제 및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 카지노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한당국은 범죄자나 그 관련자가 카지노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또는 지배지분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실소유자가 되는 것 또는 카지노의 경영권을 가지거나 운영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규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권한당국은 카지노의 AML/CFT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b) 각국은 기타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이 AML/CFT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실히 하는 효과적 시스템 관할 아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기반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는 (a) 권한당국이나 (b) 적절한 자율규제기구(SRB)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단, SRB 가 수행하는 경우 SRB 는 그 회원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기관이나 SRB 는 (a) 범죄자나 그 관련자가 전문적으로 공인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 또는 지배지분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실소유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적격성 심사제를 통한 평가); 또한 (b) AML/CFT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권고사항 35 와 일치하는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제재 조치를 가져야 한다.

## 운영과 법 집행

## 29. 금융정보분석원\*

각국은 (a)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와 (b) 자금세탁,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기타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분석된 정보의 제공을 담당하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FIU 를 설립하여야 한다. FIU 는 보고기관으로부터 추가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제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행정 및 법집행 정보에 시의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8.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DNFBPs \*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should be subject to regulatory and supervisory measures as set out below.

- (a) Casinos should be subject to a comprehensive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that ensures that they hav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necessary AML/CFT measures. At a minimum:
- casinos should be licensed;
  -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take the necessary legal or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in, or being an operator of, a casino; and
  -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ensure that casinos are effectively supervised for compliance with AML/CFT requirements.
- (b)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 other categories of DNFBPs are subject to effective systems for monitoring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AML/CFT requirements. This should be performed on a risk-sensitive basis. This may be performed by (a) a supervisor or (b) by an appropriate self-regulatory body (SRB), provided that such a body can ensure that its member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The supervisor or SRB should also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riminals or their associates from being professionally accredited, or holding or being the beneficial owner of a significant or controlling interest or holding a management function, e.g. through evaluating persons on the basis of a “fit and proper” test; and (b) hav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in line with Recommendation 35 available to deal with failure to comply with AML/CFT requirements.

## OPERATIONAL AND LAW ENFORCEMENT

## 29.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that serves as a national centre for the receipt and analysis of: (a)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 and (b) other information relevant to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and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results of that analysis. The FIU should be able to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from reporting entities, and should have access on a timely basis to th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information that it requires to undertake its functions properly.

### 30.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각국은 지정된 법집행당국이 자국의 AML/CFT 정책 기틀(framework)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정된 법집행당국은 적어도 모든 대규모 범죄수익 관련 사건에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이와 연루된(associated) 전제범죄를 수사할 때 사전 평행 금융수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는 연루된 전제범죄가 자국 관할권(jurisdiction) 바깥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국은 권한당국이 몰수대상이거나,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 또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 추적 및 동결·압수 조치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필요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자산수사팀을 영구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각국은 필요 시 외국의 관련 권한당국과의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31.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자금세탁 및 연루된(associated)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에 대해 수사 시, 권한당국은 수사, 기소 및 관련 조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및 기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의 제출, 개인 또는 건물의 수색, 증인 진술 확보, 증거 압수와 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의 사용권한을 포함한다.

각국은 권한당국이 자금세탁,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 수사 시, 이에 적절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위장 수사, 통신 감청, 컴퓨터시스템 접근 및 통제배달을 포함한다. 또한, 각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 소유 및 관리 여부를 시의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국은 또한 소유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권한당국이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 이와 연루된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 수사 시, 권한당국은 FIU가 보유한 모든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30. Responsibilities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designat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ave responsibility for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vestig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AML/CFT policies. At least in all cases related to major proceeds-generating offences, these designat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develop a pro-active parallel financial investigation when pursuing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This should include cases where the associated predicate offence occurs outside their jurisdiction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have responsibility for expeditiously identifying, tracing and initiating actions to freeze and seize property that is, or may become, subject to confiscation, or is suspected of being proceeds of crime. Countries should also make use, when necessary, of permanent or temporary multi-disciplinary groups specialised in financial or asset investigation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when necessary, cooperative investigations with appropriate competent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take place.

### 31. Powers of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When conducting investigations of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obtain access to all necessa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use in those investigations, and in prosecutions and related actions. This should include powers to use compulsory measures for the production of records held by financial institutions, DNFBPs and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for the search of persons and premises, for taking witness statements, and for the seizure and obtaining of evidence.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conducting investigations are able to use a wide range of investigative techniques suitable for the investigation of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These investigative techniques include: undercover operations, intercepting communications, accessing computer systems and controlled delivery. In addition, countries should have effective mechanisms in place to identify, in a timely manner, whe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hold or control accounts. They should also have mechanisms to ensure that competent authorities have a process to identify assets without prior notification to the owner. When conducting investigations of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be able to ask for all relevant information held by the FIU.

### 32.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각국은 세관신고시스템 및/혹은 정보공개체제 등을 통해 현금과 무기명지급수단이 물리적으로 국경 간 이전되는 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국은 테러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와 관련 있다고 의심되거나 허위로 신고·공개된 현금이나 무기명 지급수단의 (휴대반출입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권한당국에 부여하여야 한다.

각국은 허위 신고·공개를 하는 자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위반사항에 비례하며 억제력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금이나 무기명지급수단이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와 연루된 경우, 각국은 권고사항 4 에 따른 법적 조치를 포함한 현금이나 무기명지급수단을 몰수할 수 있는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일반적 요건

### 33. 통계

각국은 자국의 AML/CFT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집·제공된 STR,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기소·유죄판결, 동결·압수·몰수된 재산, 사법공조 및 기타 국제협력 요청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34. 지침과 피드백

권한당국과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구 (SRB)는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전문직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적 조치를 이행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고 보고하는데 도움이 될 지침을 확립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제재

### 35. 제재

각국은 권고사항 6 및 8-23 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수의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재조치는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 사업자·전문직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 이들의 이사급과 고위관리급 인사에게도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

### 32. Cash couriers \*

Countries should have measures in place to detect the physical cross-border transportation of currency and bearer negotiable instruments, including through a declaration system and/or disclosure system.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mpetent authorities have the legal authority to stop or restrain currency or bearer negotiable instruments that are suspected to be related to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or predicate offences, or that are falsely declared or disclosed.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are available to deal with persons who make false declaration(s) or disclosure(s). In cases where the currency or bearer negotiable instruments are related to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or predicate offences, countries should also adopt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ones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 4, which would enable the confiscation of such currency or instruments.

#### GENERAL REQUIREMENTS

### 33. Statistics

Countries should maintain comprehensive statistics on matters relevant to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ir AML/CFT systems. This should include statistics on the STRs received and disseminated; on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on property frozen, seized and confiscated; and on mutual legal assistance or other international requests for cooperation.

### 34. Guidance and feedback

The competent authorities, supervisors and SRBs should establish guidelines, and provide feedback, which will assist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in applying national measures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nd, in particular, in detecting and reporting suspicious transactions.

#### SANCTIONS

### 35. Sanctions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re is a range of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whether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vailable to deal with natural or legal persons covered by Recommendations 6, and 8 to 23, that fail to comply with AML/CFT requirements. Sanctions should be applicable not only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DNFBPs, but also to their directors and senior management.

## G. 국제협력

### 36. 국제협약의 이행

각국은 비엔나 협약, 팔레모 협약, 2003 년의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 테러자금조달금지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2001 년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 협약, 2002 년의 테러방지에 관한 미주협약, 2005 년의 범죄수익 자금세탁, 수색, 압수, 몰수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유럽 협약 등과 같은 기타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이 권고된다.

### 37. 국제사법공조

각국은 자금세탁, 연루된 전제범죄와 테러자금조달의 수사, 기소 및 관련 사법절차에 최대한 폭넓은 사법공조를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각국은 사법공조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 시 공조강화를 위한 조약, 법률관계 혹은 기타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은:

(a) 사법공조를 금지하거나 비합리적인 또는 부당한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b) 사법공조 요청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국은 요청의 효과적인 전달 및 이행을 위하여 중앙당국 또는 기타 준비된 공식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청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c) 범죄행위가 재정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d) 금융기관 또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이 비밀 혹은 기밀유지의 법적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 특권 또는 비밀엄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수사 또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뢰 받은 사법공조 요청과 해당 내용에 대한 기밀을 자국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공조를 요청받은 국가가 기밀유지 의무를 지킬 수 없는 경우, 공조를 요청한 국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 G. INTERNATIONAL COOPERATION

### 36. International instruments

Countries should take immediate steps to become party to and implement fully the Vienna Convention, 1988; the Palermo Convention, 200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3; and the Terrorist Financing Convention, 1999. Where applicable, countries are also encouraged to ratify and implement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2001;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Terrorism, 2002; and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 and on the Financing of Terrorism, 2005.

### 37. Mutual legal assistance

Countries should rapidly,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provide the widest possible rang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relation to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related proceedings. Countries should have an adequate legal basis for providing assistance and, where appropriate, should have in place treaties, arrangements or other mechanisms to enhance cooperation. In particular, countries should:

(a) Not prohibit, or place unreasonable or unduly restrictive conditions on, the provision of mutual legal assistance.

(b) Ensure that they have clear and efficient processes for the timely prioritisation and execution of mutual legal assistance requests. Countries should use a central authority, or another established official mechanism, for effective transmission and execution of requests. To monitor progress on requests, a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maintained.

(c) Not refuse to execute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on the sole ground that the offence is also considered to involve fiscal matters.

(d) Not refuse to execute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on the grounds that laws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or DNFBPs to maintain secrecy or confidentiality (except where the relevant information that is sought is held in circumstances where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or legal professional secrecy applies).

(e)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mutual legal assistance requests they receive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m, subject to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law, in order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or inquiry. If the requested country can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confidentiality, it should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country.

각국은 쌍방가벌성 요건이 부재하더라도 공조요청에 강압적 행위가 수반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공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국은 쌍방가벌성 요건이 부재한 경우에도 폭넓은 사법공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이러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법공조를 위하여 쌍방가벌성이 요구되는 경우, 양국 모두 해당 범죄에 전제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면, 양국이 해당 범죄행위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분류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행위를 동일한 용어로 지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공조를 위한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국은 권고사항 31 에서 규정한 권한과 수사기법 및 자국의 권한당국에 주어진 권한과 수사기법 중:

- (a) 금융기관이나 그 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정보, 문서 혹은 증거(재무기록 포함)의 제출, 수색과 압수와 관련된 모든 기법과
- (b) 그 외의 다른 다수의 권한과 수사기법이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체제와 일관성이 있다면 해외 사법당국 또는 법집행당국이 국내 관련기관에 직접 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관할권의 의견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정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기 가장 적합한 국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기획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국은 사법공조 요청 시, 요청사항의 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긴급 여부 등 완전한 사실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할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속한 수단으로 요청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각국은 요청을 하기 이전에 사법공조를 받기 위한 법적 및 형식적 절차를 파악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법공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예: 중앙당국)은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재원을 제공 받아야 한다. 각국은 당국 임직원들이 비밀보장 등과 같은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은 성실도와 능력을 갖추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Countries should render mutual legal assistance,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dual criminality, if the assistance does not involve coercive actions. Countries should consider adopting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hem to provide a wide scope of assistance in the absence of dual criminality.

Where dual criminality is required for mutual legal assistance, that requirement should be deemed to be satisfied regardless of whether both countries place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provided that both countries criminalise the conduct underlying the offence.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of the power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required under Recommendation 31, and any other power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vailable to their competent authorities:

- (a) all those relating to the production,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documents or evidence (including financial record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or other persons, and the taking of witness statements; and
- (b) a broad range of other powers and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also available for use in response to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if consistent with their domestic framework, in response to direct requests from foreign judicial 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domestic counterparts.

To avoid conflicts of jurisdic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vising and applying mechanisms for determining the best venue for prosecution of defendants in the interests of justice in cases that are subject to prosecution in more than one country.

Countries should, when making mutual legal assistance requests, make best efforts to provide complete factual and legal information that will allow for timely and efficient execution of requests, including any need for urgency, and should send requests using expeditious means. Countries should, before sending requests, make best efforts to ascertain the legal requirements and formalities to obtain assistance.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mutual legal assistance (e.g. a Central Authority)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Countries should have in place processes to ensure that the staff of such authorities maintain high professional standards, including standards concerning confidentiality, and should be of high integrity and be appropriately skilled.

### 38. 국제사법공조: 동결과 몰수\*

각국은 세탁된 재산, 자금세탁·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의 수익, 이러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수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확인, 동결, 압수 및 몰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당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 당국은 자국법의 기본원칙과 일관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전몰수 기반의 소송절차와 관련 잠정조치를 기반으로 한 요청 등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또한 이러한 재산, 수단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몰수된 재산을 상호 배분하는 문제를 포함한 압수 및 몰수 소송절차를 관리하는 방식도 마련하여야 한다.

### 39. 범죄인 송환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범죄인 송환 요청을 과도한 지체 없이 건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테러, 테러행위나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조달 혐의를 받은 개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은:

- (a)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범죄인 송환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
- (b) 필요시 범죄인 송환 요청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포함, 이를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두어야 한다. 요청처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한다.
- (c) 요청 이행에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d) 범죄인 송환을 위한 적합한 법률체제를 두어야 한다.

각국은 자국민을 송환하거나, 국적만을 근거로 범죄인 송환을 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타국의 범죄인 송환요청을 받은 후 요청사항에 명시된 범죄를 기소하는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자국의 권한당국에 송치하여야 한다. 권한당국은 자국법상으로 중죄를 처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과 사법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관련 국가들은 기소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절차와 증거 측면에서 특히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38. Mutual legal assistance: freezing and confiscation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the authority to take expeditious action in response to requests by foreign countries to identify, freeze, seize and confiscate property laundered; proceeds from money laundering,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instrumentalities used in, or intended for use in, the commission of these offences; or property of corresponding value. This authority should include being able to respond to requests made on the basis of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proceedings and related provisional measures, unless this is inconsistent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ir domestic law. Countries should also have effective mechanisms for managing such property, instrumentalities or property of corresponding value, and arrangements for coordinating seizure and confiscation proceedings, which should include the sharing of confiscated assets.

### 39. Extradition

Countries should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execute extradition requests in relation to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without undue delay. Countries should also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do not provide safe havens for individuals charged with the financing of terrorism, terrorist acts or terrorist organisations. In particular, countries should:

- (a) ensur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re extraditable offences;
- (b) ensure that they have clear and efficient processes for the timely execution of extradition requests including prioritisation where appropriate. To monitor progress of requests a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maintained;
- (c) not place unreasonable or unduly restrictive conditions on the execution of requests; and
- (d) ensure they have an adequate legal framework for extradition.

Each country should either extradite its own nationals, or, where a country does not do so solely on the grounds of nationality, that country should, at the request of the country seeking extradition, submit the case, without undue delay,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the request. Those authorities should take their decision and conduct their proceedings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ther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country. The countries concerned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on procedural and evidentiary aspects,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uch prosecutions.

범죄인 송환을 위하여 쌍방가벌성이 요구되는 경우, 양국 모두 해당 범죄에 전제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면, 양국이 해당 범죄행위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분류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행위를 동일한 용어로 지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공조를 위한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국은 자국법의 기본원칙과 일관되도록 해당당국간 긴급인도구속 요청서 직접전달 허용, 오직 구속영장 혹은 재판에 의한 범죄인 송환, 공식 범죄인 송환 절차 포기에 동의한 개인에게 간소화된 범죄인 송환 절차 적용 등 간소화된 범죄인 송환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은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재원을 제공 받아야 한다. 각국은 관련 당국 임직원들이 비밀보장 등과 같은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고, 높은 성실도와 능력을 갖추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40. 기타 국제협력\*

각국은 자국의 권한당국이 자금세탁, 연루된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폭넓은 국제협력을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이를 자발적으로 또는 상대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국제협력을 제공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각국은 권한당국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권한당국이 양해각서와 같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들)이 필요할 경우, 이는 가장 넓은 범위의 외국 해당기관들과 시의 적절하게 협의되어야 하고 서명되어야 한다.

권한당국은 정보 혹은 기타 지원방법의 요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경로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권한당국은 공조요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의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고, 받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가져야 한다.

Where dual criminality is required for extradition, that requirement should be deemed to be satisfied regardless of whether both countries place the offence within the same category of offence, or denominate the offence by the same terminology, provided that both countries criminalise the conduct underlying the offence.

Consistent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law, countries should have simplified extradition mechanisms, such as allowing direct transmission of requests for provisional arrests between appropriate authorities, extraditing persons based only on warrants of arrests or judgments, or introducing a simplified extradition of consenting persons who waive formal extradition proceedings.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extradition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Countries should have in place processes to ensure that the staff of such authorities maintain high professional standards, including standards concerning confidentiality, and should be of high integrity and be appropriately skilled.

#### 40.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ir competent authorities can rapidly, constructively and effectively provide the widest ra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lation to money laundering, associated predicate offences and terrorist financing. Countries should do so both spontaneously and upon request, and there should be a lawful basis for providing cooperation. Countries should authorise their competent authorities to use the most efficient means to cooperate. Should a competent authority need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such a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hese should be negotiated and signed in a timely way with the widest range of foreign counterparts.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use clear channels or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transmission and execution of requests for information or other types of assistanc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have clear and efficient processes for the prioritisation and timely execution of requests, and for safeguarding the information received.

# FATF 권고사항 주석서

## 권고 1에 대한 주석 (위험 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1. 위험기반접근법(RBA)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부문별 RBA 이행방법을 결정할 때 각국은 해당 부문의 역량 및 AML/CFT 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AML/CFT 역량과 경험이 더 많은 금융기관 및 특정 전문직·비금융사업자(DNFBP) 부문에 대해 RBA에 입각하여 더 많은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고위험 상황이 확인되었을 때 금융기관 및 DNFBP가 강화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RBA를 채택함으로써 권한당국, 금융회사 및 DNFBP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 또는 그 위험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RBA 실행 시 금융기관 및 DNFBP는 ML/TF 위험을 확인,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경감시키는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RBA의 일반 원칙은 이렇하다. 보다 높은 위험이 있을 경우,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에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여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시켜야 하며, 마찬가지로 위험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간소화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될 때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이 특정 의무사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각 권고사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각국은 또한 매우 제한된 상황이면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금융기관, 금융활동, 또는 DNFBP(아래 참조)에 대해 일부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국은 자국의 위험평가를 통해 ML/TF로부터 남용될 소지가 있고 금융기관 또는 DNFBP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금융기관, 금융활동, 사업체 또는 직업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부문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각국의 의무 및 결정**
3. **위험 평가** - 각국은 자국의 ML/TF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i) 법, 규정 및 기타 법체제 개정을 포함하여 자국의 AML/CFT 체제에 잠재적인 변경이 필요함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i) 권한당국에 의한 AML/CFT 자원배분과 우선순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iii) 금융기관 및 DNFBP가 실시하는 AML/CFT 위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국은 평가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모든 관련당국 및 자율규제기구(SRB), 금융기관, DNFBP에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위험** - 고위험을 확인한 경우, 각국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1) 자국의 AML/CFT 시스템이 이러한 고위험을 적절히 다루도록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2) 자국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금융기관 및 DNFBP로 하여금 위험을 관리 및 완화하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금융기관 및 DNFBP가 실시하는 위험평가에 이러한 위험내용이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FATF 권고사항이 강화된 조치 또는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활동을 확인하는 경우, 특정 위험도에 따라 조치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5. 저위험** - 각국은, 저위험이 확인되고 이것이 위 '3.'에서 언급된 자국의 ML/TF 위험평가와 일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DNFBP에 대해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 간소화된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각국은 또한 위 문단에 따른 특정 저위험 유형에 대한 결정과는 별도로, 아래 section B의 “금융기관 및 DNFBP의 의무 및 결정”과 '7.'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기관 및 DNFBP가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

**6. 면제사항** - 다음의 경우는 각국이 금융기관 또는 DNFBP로 하여금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a) ML/TF의 저위험이 입증된 경우; 엄격히 제한되고 정당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그리고 특정 유형의 금융기관, 금융활동 또는 DNFBP와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b)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을 제외한) 금융활동이 일회성 또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행해져, ML/TF 위험도가 낮을 경우.

수집된 정보가 위험도에 따라 다르더라도 권고 11의 기록 보관 요건은 수집된 정보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7. **위험의 감독 및 모니터링** - 감독기관(또는 관련 DNFBP 부문의 SRB들)은 금융기관 및 DNFBP가 아래 명시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능을 수행할 시, 감독기관 및 자율규제기구(SRB)는, 권고사항 26 및 28의 주석이 요구하는 바대로, 금융기관 및 DNFBP가 준비한 ML/TF 위험 기록 및 위험평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B. 금융기관 및 DNFBP의 의무 및 결정

8. **위험 평가** - 금융기관 및 DNFBP는 ML/TF 위험(고객별, 국가 및 지역별; 상품/서비스/거래/전달채널별)을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거 입증, 평가 업데이트를 위해 그러한 평가를 문서화하고 관계당국 및 SRB에 위험평가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여야 한다. ML/TF 위험평가의 성격 및 범위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금융기관 및 DNFBP는 항상 자신의 ML/TF위험을 이해해야하나, 관계당국 또는 SRB이 해당 부문에 내재하는 특정 위험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한 경우에는 개별 위험평가 문서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9. **위험 관리 및 완화** - 금융기관 및 DNFBP는 (국가, 금융기관, 또는 DNFBP가 확인한)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완화를 위한 정책, 통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필요 시 그러한 통제를 모니터링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정책, 통제 및 절차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험 관리 및 완화를 위해 (위험의 높낮음과 관계없이) 시행된 조치는 자국의 의무사항과 관계당국 및 SRB의 지침과 일치하여야 한다.

10. **고위험** - 고위험이 확인 된 경우, 금융기관 및 DNFBP는 해당 위험의 관리 및 완화를 위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저위험** - 저위험이 확인 된 경우, 각국은 해당 위험의 관리 및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및 DNFBP가 간소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2. 위험평가 시, 금융기관 및 DNFBP는 전체 위험도 및 적용할 완화조치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및 DNFBP는 다양한 위험요소의 위험 유형 및 수위에 따라 조치의 범위를 차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고객수용조치에는 일반적인 CDD를, 상시 모니터링에는 강화된 CDD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역으로도 가능하다.)

## 권고 3에 대한 주석 (자금세탁 범죄)

1. 각국은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비엔나 협약) 및 2000년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팔레모 협약)에 기초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화하여야 한다.
2. 각국은 전제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목적으로 모든 중대범죄에 자금세탁범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각국은 전제범죄를 모든 범죄로 하거나; 중대범죄의 범주 또는 적용 가능한 형량을 기준으로 정하거나(기준식 접근법); 또는 전제범죄 목록을 정하거나(나열식 접근법); 또는 위 접근법들의 조합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식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전제범죄는 최소한 국내법상 중대범죄에 속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거나, 최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포함, 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법체계 국가의 경우 전제범죄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모든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
4. 어느 접근법을 채택하든, 각국은, 최소한, 지정된 범죄 범주 내에 다양한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 자금세탁범죄는 가치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모든 종류의 재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전제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일 필요는 없다.
5. 자금세탁에 대한 전제범죄는 국외에서 발생하여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성립되고, 만약 국내에서 발생했다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로 확대되어야한다. 각국은 행위가 만약 국내에서 발생하여 전제범죄로 성립했을 경우를 유일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6. 각국은, 자국법의 근본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자금세탁범죄가 전제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7. 각국은
  - (a) 자금세탁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고의와 인식을 객관적 사실관계로부터 추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자금세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에게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형사 제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c) 법인에게 형사책임과 제재가, 혹은 이것이 (자국법의 근본규범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민사상 또는 행정법상 책임과 제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복수의 책임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병행소송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d) 자국법의 근본규범에 의해 불허되지 않는 한, 기수·미수·방조·교사·원조·자문제공의 참여·연루·음모를 포함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적절한 부속범죄가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 **권고 4 및 38에 대한 주석 (몰수와 잠정조치)**

각국은 권한당국이 동결되거나 압류, 몰수된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내 소송절차 및 외국의 요청에 따른 경우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 권고 5에 대한 주석 (테러자금조달 범죄)

### A. 목적

1. 권고 5는 각국이 테러자금조달을 행하는 자를 기소 및 형사 처벌 하는 사법적 권한을 보유토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자금세탁과 국제테러리즘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각국이 테러자금조달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포함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연관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도 권고 5의 목적이다.

### B.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성격

2.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수단의 종류를 막론하고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a) 테러행위나 (b) 테러조직, 또는 (c) 개별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용된다는 불법적인 의도 또는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고의로 제공 또는 모집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3. 테러자금조달을 방조, 교사, 미수 또는 공모로만 범죄화 하는 것으로는 본 권고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테러자금조달범죄는 출처의 적법성을 불문한 모든 자금을 적용되어야 한다.
5. 테러자금조달범죄는 해당 자금이 (a) 테러행위에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미수, 혹은 (b) 특정 테러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각국은 테러자금조달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고의 및 인식을 객관적 사실관계로부터 추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테러자금조달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한 형사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게 부과되어야 한다.
8. 법인에 대하여 형사 책임 및 제재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및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인에 대하여 복수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를 병행

하는 것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를 가할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이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제재조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9. 테러자금조달 미수도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10. 다음 각 항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 역시 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
  - (a) 본 주석 2문단과 9문단에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
  - (b) 본 주석 2문단과 9문단에 규정된 범죄 음모 및 교사;
  - (c)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개인 집단이 본 주석 2문단과 9문단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범행을 자행하는 것에 기여. 그러한 기여는 의도적이어야 하며
    - (i)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범죄목적은 조장할 의도로 행해지거나
    - (ii) 동 집단의 테러자금조달범죄 의도를 알고 행해져야 한다.
11. 테러자금조달범죄는 혐의자가 있는 곳이 테러리스트/테러조직이 위치한 국가 또는 테러행위가 자행된/될 국가와 동일한지 또는 상이한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권고 6에 대한 주석 (테러·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 A. 목적

1. 권고 6은 각국이 UN결의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테러 관련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동결하고 (i) S/RES/1267(1999) 및 후속조치에 따라 UN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자와 단체, 또는 (ii) S/RES/1373(2001)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자 혹은 단체가 그러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강조할 사항은 권고 6의 의무사항 중 어느 것도 권고 4(몰수와 잠정조치)에 따른 형사, 민사, 행정 사건 관련 조사 또는 소송과 관계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기존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고 6의 조치는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보완할 수 있고 권한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송절차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권고 6의 주안점은 테러집단에 대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흐름 또는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있다. 또한 각국은 효과적인 테러자금조달방지 체제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 B. 테러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원하는 개인/단체 확인 및 지정

3. 결의 1267호(1999) 및 그 후속 결의안의 경우, 알카에다에 관련된 대상자는 1267 제재위원회가, 탈레반에 관계된 대상자는 1988 제재위원회가 UN헌장 제7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결의 1373호(2001)의 경우, 대상자는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의 요청으로, 지정 요청을 받은 국가가 적용 가능한 법적 원칙에 따라 지정 대상이 아래 'E. UN 지정 기준'에서 설명한 결의 1373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다.
4. 각국은 관련 UN안보리결의에서 규정한 의무에 부합하게, 1267호(1999)와 후속 결의가 목표로 하는 개인/단체를 식별하고 이들을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한과 절차 또는

메커니즘은 각국이 이러한 결의안에 응하여, 안보리 list-based programmes에 따라, 안보리에게 개인 및 단체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각국은 또한 S/RES/1373 (2001)에 따라 개인 및 단체 확인·지정을 위해 안보리 결의안과 일치하는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과 절차 또는 메커니즘은 각국이 아래 'E. UN 지정 기준'에서 기술된 결의 1373호 (2001)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및 단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결의 1267호 (1999) 및 후속 결의와 결의 1373호 (2001)를 이행하는 국가 체제는 아래 필요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각국은 당국과 법원이 아래의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1267 제재위원회에 결의 1989호 (2011) (알카에다 관련 결의)와 관련 결의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단체가, 타당할 시, 지정될 것을 제안;
  - (ii)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1988 제재위원회에 결의 1988호 (2011)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협하는 탈레반 및 관련자에 관한 결의)와 관련 결의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단체가, 타당할 시, 지정될 것을 제안;
  - (iii) 결의 1373호 (2001)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단체를 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국가의 요청을 받아, 검토한 후, 제안된 지정자가 준거법상 아래 'E. UN 지정 기준'에 제시된 결의 1373호 (2001)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하는 지정.
- (b) 각국은 지정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결의 1988호 (2011) 및 결의 1989호 (2011)와 관련 결의문, 그리고 결의 1373호 (2001)에 근거한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내용은 아래 'E. UN 지정 기준'에서 확인). 이는 결의 1373호 (2001)에 따라 외국의 자금 동결 메커니즘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할 경우 그 효력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또는 효과적인 절차 및 메커니즘의 보유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협력 개발을 위하여, 각국은 요청 접수시 요청에서 제안된 지명자가 결의 1373호 (2011)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c) 권한 당국(들)은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에 의한 의심 및 믿음을 바탕으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단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 또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및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 (d) 지정( 및 제안)을 할 것인가 결정할 때에, 각국은 "합리적인 이유" 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입증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의 1373호 (2001)에

따른 지정의 경우, 각국의 권한당국은 개인/단체의 지정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합리적인 근거” 존재 여부 증거의 종류와 양에 관해 자국 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건의된 지정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외국의 요청으로 제시되었는가와 무관하며, 이러한 지정( 및 제안)은 형사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e) 결의 1267호 (1999) 및 후속 결의에 따라 1267 제재위원회에 알카에다 제재 명단에 추가될 대상자를 제안할시, 각국은
  - (i) 1267 제재위원회가 채택한 지정 절차 및 표준형식을 따르며,
  - (ii) 제시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특히 개인/그룹/사업/단체의 신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폴이 특별 통고(special notice)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 (iii) 개인/단체가 해당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보 (관련 안보리 결의의 특정 지정 기준은 아래 ‘E. UN 지정 기준’ 참조), 정보의 특성, 제공가능한 지지 자료 및 정보와 제안한 지정자 및 현재 지정된 개인/단체의 관련성 상세정보 등 명단 기재 사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포함한 사안에 대한 진술(statement of case)을 제공해야 한다. Statement of case는, 회원국의 판단 하에 기밀정보로 분류되는 부분 외에는, 요청 시 배포가능해야 한다.
  - (iv) 대상자를 지정한 국가의 정체가 드러나도 되는가도 기입해야 한다.
- (f) 결의 1988호 (2011) 및 후속 결의에 따라 1988 위원회에 탈레반 제재명단에 추가될 대상자를 제안할시, 각국은
  - (i) 1988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 및 표준형식을 따르며,
  - (ii) 제시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특히 개인/그룹/사업/단체의 신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터폴이 특별 통고(special notice)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 (iii) 개인/단체가 해당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보 (관련 안보리 결의의 특정 지정 기준은 아래 ‘E. UN 지정 기준’ 참조), 정보의 특성, 제공가능한 지지 자료 및 정보와 제안한 지정자 및 현재 지정된 개인/단체의 관련성 상세정보 등 명단 기재 사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포함한 사안에 대한 진술(statement of case)을 제공해야 한다. Statement of case는, 회원국의 판단 하에 기밀정보로 분류되는 부분 외에는, 요청 시 배포 가능해야 한다.
- (g) 외국에 결의 1373호 (2001)에 따라 이행된 동결 메커니즘에 의해 시작된 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청할시, 요청국은 대상자 이름과 개인/단체의 신원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개인/단체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안보리 결의 지정 기준은 아래 'E. UN 지정 기준'를 참조).

- (h) 각국은 확인되고 지정(제안) 대상자로 고려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 C. 지정된 개인 및 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 동결과 거래금지

5. 각국은 (결의 1267호 (1999) 및 후속 결의에 따라 설립된) 1267 제재위원회와 1988 제재위원회가 유엔헌장 제7장의 권한 아래 행동할 경우, 동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단행할 의무가 있다. 결의 1373호 (2001)의 경우, 지정된 개인/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하고 그 거래를 금지할 의무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요청을 받은 국가가 적용가능한 법적 원칙에 따라 지정대상이 결의 1373호 (2001)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국가의 요청에 의한 지정으로부터 발생한다.

6. 각국은 다음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적 권한을 정립하고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하고 시행할 책임을 지는 국내 권한 당국을 확인해야 한다.

- (a) 각국은 국내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지정된 개인/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그리고 사전 경고 없이 동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정 행위, 계획 또는 확산 위협과 연결된 자금/자산뿐만 아니라, 지정된 개인/단체가 보유하고 통제하는 모든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 및 통제하는 모든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 및 기타 자산으로부터 유래/발생한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

- (b) 각국은, 인허가를 받거나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라 통보하였을 경우 (아래 'E. UN 지정 기준' 참고) 외에는, 국민 또는 영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정된 개인/단체에게, 또는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통제하는 단체에게, 또는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에게 자금이나 기타 자산, 경제적 자원 또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c)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에게 지정사항을 지체없이 전달하고 특히 제재

대상인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DNFBP 등 개인/단체에게 동결 메커니즘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 (d)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가 관련 안보리 결의의 금지사항에 따라 자금 동결 및 기타 조치를 권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 각국은 권고 6의 사항을 이행할시, 선의의 제3자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D. 지정해제, 동결해제, 동결자금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 제공**

- 7. 각국은 결의 1267호(1999) 및 후속결의에 따라 지정된 개인/단체가 (더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지정해제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공표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1267 위원회 또는 1988 위원회가 지정된 개인/단체를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자금을 동결할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알카에다와 관련된 명단 삭제 요청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1267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1730호 (2006), 1735호 (2006), 1822호 (2008), 1904호 (2009), 1989호 (2011), 그리고 후속결의에 따라 채택한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안정 및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1988 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1730호 (2006), 1735호 (2006), 1822호 (2008), 1904호 (2009), 1988호 (2011) 및 후속 결의에 따라 채택한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 8. 결의 1373호 (2001)에 따라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각국은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개인/단체를 명단에서 삭제하고 그 자금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권한 및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보유해야 한다. 각국은 또한 요청 시 법원 또는 기타 독립당국으로부터 지정 결정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9. 지정된 개인/단체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동결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은 개인/단체에 대해 (즉, 긍정오류의 경우), 각국은 그러한 개인/단체가 지정된 자와 관련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러한 개인/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를 위해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 10. 각국은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이 기본적인 비용이나, 특정 수수료, 서비스 요금 지불, 또는 특별비

용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보리 결의 1452호 (2002) 및 후속결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러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각국은 결의 1963호 (2010)에 규정된바 1373호 (2001)에 따라 지정된 개인/단체에 동결 조치가 적용된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동결된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1.** 각국은 지정된 개인/단체가 관계 당국이나 법원이 지정 조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알카에다 제재 명단상의 지정에 관련해서는, 각국은 지정해제 청원을 받는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Ombudspers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2.** 각국은 지정 및 동결 해제를 금융기관 DNFBP에 즉각 알릴 수 있고 특히 금융기관 및 DNFBP를 포함한 기타 개인/단체가 해제 조치를 따르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 **E. UN 지정 기준**

**13.**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안보리 결의 1267호 (1999), 1989호 (2011) 및 후속 결의안:

(i) 알카에다와 그 분자 및 분파 등의 행위나 활동 관련 자금조달, 계획, 촉진, 준비 및 범행에 참여; 또는 그와 연관된, 소속된, 대리, 지원하는 개인/단체; 무기 및 관련 자재를 공급, 판매하는 개인/단체;

(ii) 위 13(a)(i)항에 의해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b) 안보리 결의 1267호 (1999), 1988호 (2011) 및 후속 결의안:

(i) 탈레반과 연루되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 그룹, 사업 및 단체 등의 행위나 활동 관련 자금조달, 계획, 촉진, 준비 및 범행에 참여; 또는 그와 연관된, 소속된, 대리, 지원하는 개인/단체; 무기 및 관련 자재를 공급, 판매하는 개인/단체;

(ii) 위 13(b)(i)항에 의해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그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c) 안보리 결의 1373호 (2001):

(i) 테러행위를 자행하거나 시도, 또는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모하는 개인/단체;

(ii) 위 13(c)(i)항에 의해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또는

(iii) 위 13(c)(i)항에 의해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

## 권고 7에 대한 주석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 A. 목적

1. 권고 7은 각국이 UN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UN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조달 방지 관련 결의에 따라 지정한 자(자연인과 법인) 및 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체없이 동결하고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강조할 사항은 권고 7의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WMD비확산 관련 국제조약 또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형사, 민사, 행정 사건 관련 조사 또는 소송과 관계되는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기존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고 7의 주안점은 확산자 또는 확산에 대한 자금이나 기타 자산의 흐름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한 예방조치이며 이는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요구사항이다.

### B. 지정

3. 지정은 관련 결의의 부속서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결의에 의해 설치된 안보리 산하 위원회가 한다. 유엔회원국에게 관련 안보리 위원회에 지정을 제의할 의무가 특별히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회들은 주로 회원국들의 지정 요청에 의존한다.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737호(2006)상 위원회들은 필요 시 동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반포하여야 한다.
4. 각국은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이행에 관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및 효과적인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 (a) 다음의 권한을 갖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지정함.
    - (i) 당국이 지정기준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믿고 이를 결정할 경우, 결의 1718호(2006) 및 후속 결의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지정을 1718 제재위원회에 제의 (관련 안보리 결의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 'E. UN 지정 기준'을 참조).

- (ii) 당국이 지정기준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믿고 이를 결정한 경우, 결의 1737호 (2006) 및 후속 결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적절한 지정을 1737 제재위원회에 제의 (관련 안보리 결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 'E. UN 지정 기준'을 참조).
- (b) 결의 1718호 (2006), 1737호 (2006) 및 후속결의에 명시된 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지정할 대상자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보유함. 이러한 절차는 적용 가능한 (초)국가적 원칙에 따라 지정 제의를 위한 합리적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c)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개인과 단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권한 및 절차 또는 메커니즘 보유하여야 함.
- (d) 지정 제의를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본 주석서 E.의 기준을 고려함. 지정에 관한 제의는, 각국의 권한당국이 인권, 법의 지배 존중, 선의 제3자의 권리 승인 등을 고려하여 자국 법체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함.
- (e) 결의 1718호(2006)와 후속결의 또는 결의 1737호(2006)와 후속결의에 따라, 1718 제재위원회 또는 1737 제재위원회에게 대상자 명단을 제시할 때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i) 성명, 특히 개인/법인 및 단체의 정확하고 확실한 신원 파악을 위한 충분한 확인 정보.
  - (ii) 개인/법인 및 단체가 관련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특정 정보.
- (f) 확인되었거나 지정 제의가 검토되고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 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함.

## C. 지정된 개인 및 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 동결 및 거래금지

5. 각국은 지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정밀금융제재를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 (a) 결의 1718호 (2006) 및 후속결의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결의 부속서에서 지정하거나 1718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단체.
  - (b) 결의 1737호 (2006) 및 후속결의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결의 부속서에서 지정하거나 1737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단체.
 이는 위 제재위원회들이 UN헌장 제7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지정한 경우에 그러하다.

6. 각국은 다음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적 권한을 정립하고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국내 권한당국을 확인해야 한다.
- (a) 각국은 국내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지정된 개인/단체의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그리고 사전 경고 없이 동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다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정 행위, 계획 또는 확산 위협과 연결된 자금/자산뿐만 아니라, 지정된 개인/단체가 보유하고 통제하는 모든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통제하는 모든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가 보유하고 통제하는 자금 및 기타 자산으로부터 파생/발생한 자금 및 기타 자산; 지정된 개인/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
  - (b) 각국은 국민 또는 영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정된 개인/단체를 위해 자금/기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거나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임.
  - (c)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에 지정사항을 지체없이 전달하고 특히 제재 대상인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DNFBP등에게 동결 메커니즘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 (d)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가 관련 안보리 결의의 금지사항에 따라 자금 동결 또는 다른 조치에 등 권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 각국은 권고 7의 사항을 이행할시, 선의의 제3자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 (f)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의 권고 7의 의무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 등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행정, 또는 형사상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 **D. 지정해제, 동결해제, 동결자금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 제공**

7. 각국은 더 이상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정자 및 지정단체에 대한 지정해제 요청을 안보리에 제출할 수 있는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재 위원회가 지정을 해제한 후에는 더 이상 자금동결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결의 1730호 (2006) 및 후속결의에 따라 채택된 해당 가이드라인 및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각국은 결의 1730호 (2006)에 따라 지정된 개인/단체가 Focal Point에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정된 개인/단체가 Focal Point에 직접 청원할 수 있도록 알려

줘야 한다.

8. 지정된 개인/단체와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져 동결 메커니즘에 의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는 개인/단체에 대해 (즉, 긍정오류의 경우), 각국은 지정된 개인/단체가 아님을 확인한 후, 자금 및 기타 자산 동결을 시의 적절하게 해제하기 위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9. 각국은 결의 1718호 (2006) 및 1737호 (2006)에 명시된 면책 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한 후,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자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10. 각국은 결의 1718호 (2006) 또는 1737호 (2006)에 따라 동결된 계좌에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익 또는 계약지급금 등이 추가되는 것을 허용하되, 이 또한 동결 대상이다.
11. 결의 1737호 (2006)에 따른 동결조치는 지정된 개인/단체가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상의 대금 납부를 막지 못한다.
  - (a) 관련국이 판단했을 때, 계약이 해당 안보리 결의 상 금지된 물건, 재료, 장비, 재화, 기술, 원조, 교육, 재정지원, 투자, 중개, 또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경우.
  - (b) 관련국이 판단했을 때, 결의 1737호 (2006)에 따라 지정된 개인/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금을 받지 않을 경우.
  - (c) 관련국이 이러한 송금이나 수취, 또는 자금 및 기타 금융자산이나 경제적 자원 등을 허용할 의도를 근무일 기준으로 공식 허가 10일전에 1737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 했을 경우.
12. 각국은 지정 및 동결 해제를 금융기관과 DNFBP에 즉각 알릴 수 있고 특히 금융기관 및 DNFBP를 포함한 기타 개인/단체가 해제 조치를 따르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 D. UN의 지정 기준

13. UN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 (a) 결의 1718호 (2006):
    -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이하 북한)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

- (ii) 북한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수단 등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iii) 위 (a)(i) 및 (a)(ii)에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iv) 위 (a)(i) 및 (a)(ii)에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b) 결의 1737호 (2006), 1747호 (2007), 1803호 (2008) 및 1929호 (2010):
- (i) 이란의 핵확산민감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
  - (ii) 이란의 핵확산민감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iii) 위 (b)(i) 및 (b)(ii)의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iv) S/RES/1929 (2010)에 따라 지정된 이슬라믹혁명수비대의 개인 및 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v) S/RES/1929 (2010)에 따라 지정된 이슬라믹혁명수비대의 개인 및 단체가 불법수단 등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 (vi) S/RES/1929 (2010)에 따라 지정된 이란국영선사(IRISL)의 단체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vii) S/RES/1929 (2010)에 따라 지정된 이란국영선사(IRISL)의 단체가 불법수단 등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 (viii)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보기에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의 S/RES/1737 (2006), S/RES/1747 (2007), S/RES/1803 (2008) 또는 S/RES/1929 (2010)에 의한 제재 회피 또는 규정 위반을 도운 개인 또는 단체.

## 권고 8에 대한 주석 (비영리단체)

### A. 개요

1. 비영리단체(NPO)는 세계 및 국가 경제와 사회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영리단체의 노력은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안과 희망을 주며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활동을 보완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제 테러자금조달 금지 활동을 통하여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이 자금의 모집 및 이동, 병참 지원, 테러리스트 모집, 테러조직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NPO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NPO부문의 악용은 테러 행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NPO의 도덕성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테러리스트의 악용으로부터 NPO부문을 보호하는 것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NPO의 도덕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NPO는 다양한 이유로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 NPO는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문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금유동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부 NPO는 주로 테러 위협이 매우 큰 지역 내 또는 근처에서 국가 및 국제적인 활동 및 금융 거래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NPO의 법적 형태 또는 소속 국가에 따라, NPO는 정부의 감독(등록, 기록보관, 보고 및 감시 등)을 거의 받지 않거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NPO 설립을 위한 형식적 절차조차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예를 들어, 기술 및 초기자금이나 직원 고용에 필요한 신원조회 관련 규정이 없을 수 있음). 테러조직은 이와 같은 NPO의 특징을 기반으로 테러활동의 은폐 및 지원을 위해 NPO 부문에 침투하여 NPO의 자금과 활동을 악용해왔다.

### B. 목표 및 일반 원칙

3. 권고 8은 NPO가 다음을 목적으로 테러 조직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합법적인 단체로 가장; (ii) 자산동결 조치 회피 등의 목적으로 테러자금조달의 수단이 되는 합법적인 기관을 이용; (iii)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을 테러 목적으로 비밀리에 유용한 사실을 은폐. 본 주석서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접근법은 아래 일반 원칙에 기초한다.

- (a) 각국은 과거 또는 현재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의한 NPO 부문의 악용에 대해 (i) 그러한 악용으로부터 NPO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및 (ii)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NPO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b) 테러리스트의 악용으로부터 NPO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가 합법적인 자선활동을 방해 및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 NPO 부문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자와 대중들이 자선기금 및 서비스가 적법한 수혜자에게 제공된다는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PO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 도덕성, 대중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NPO 부문이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c)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NPO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조치의 목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형태의 테러 지원을 예방하고 기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 NPO가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형태의 테러 지원이 의심되거나 그러한 행위에 연루되었음이 적발되면, 각국은 우선적으로 해당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테러지원을 조사하고 중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를 통해 자선 사업 관련 선의의 적법한 수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방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수혜자 보호조치가 NPO에 의한 테러자금조달 및 기타 형태의 테러 지원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
- (d) 공공 및 민간 부문과 NPO 부문 간의 공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NPO 악용 방지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테러자금조달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NPO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보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 (e) 국가별 NPO 부분의 다양성, 개별 부문의 테러 악용 가능성 정도의 차이, 합법적인 자선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각국의 제한된 테러자금조달 방지 자원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NPO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f) 또한 NPO를 통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해 국가적 대응책을 수립함에 있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테러자금조달 위협의 성격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책도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한다.

## C. 조치

4. 각국은 NPO 부문에 대한 국내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NPO의 활동, 규모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입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각국은 NPO 활동의 성격상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NPO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각국은 또한 NPO의 테러활동 관련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주기적으로 NPO 부문을 재평가해야 한다.

5. 테러리스트에 의한 NPO의 악용을 파악, 예방 및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접근법은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a) NPO에 대한 교육, (b) 감독 또는 감시, (c) 효과적인 조사와 정보 수집, 그리고 (d) 효과적인 국제 협력 메커니즘.

(a) NPO에 대해 테러자금조달 관련 교육 실시

(i) 각국은 모든 NPO의 행정 및 관리 부문의 투명성, 도덕성 및 대중의 신뢰 제고를 위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ii) 각국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NPO의 악용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관련 NPO의 취약성, 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실시해야 한다.

(iii) 각국은 NPO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과 취약성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테러리스트의 악용으로부터 NPO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해 NPO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iv) 각국은 다양하고 시급한 자선 활동 및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국가별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NPO가 가능한 한 규제 대상 금융권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 NPO 부문에 대한 감독 또는 감시

각국은 NPO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또는 감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각국은 전체 NPO 부문의 금융자원 및 국제 활동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NPO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i) NPO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1) 규정된 활동의 목적과 목표, (2) 임원, 이사, 신탁인 등 NPO 활동을 소유, 통제 또는 지시하는 자의 신원자료. 이와 같은 정보는 NPO로부터 직접 혹은 관계 기관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ii) NPO는 수입 및 지출 관련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매년 공개

해야 한다.

- (iii) NPO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허가 및 등록 관련 정보는 관계 당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 (iv) NPO는 모든 자금을 완전히 파악하고 규정된 활동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v) NPO는 “수혜자 및 관련 NPO 알기”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NPO가 수혜자 및 관련 NPO의 신원, 자격 및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NPO는 중요한 기부자의 신원사항을 기록하고, 기부자 기밀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vi) NPO는 국내외 거래기록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이러한 기록은 해당 자금이 NPO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한 정보이어야 한다. 이는 위 (i)항과 (ii)항에 명시된 정보에도 적용된다.
  - (vii) 관계 기관은 NPO가 적절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NPO 또는 NPO 대표자의 규칙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히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 (c) 효과적인 정보수집과 조사
- (i) 각국은 NPO 관련 정보를 보유한 모든 관계 기관 및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협조, 조율, 정보공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ii) 각국은 테러활동이나 테러조직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관련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NPO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iii) 각국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 NPO의 관리 및 행정에 관한 모든 정보 (재정 및 프로그램 정보 등)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iv) 각국은 특정 NPO가 다음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정보가 예방조치 및 조사를 위해 모든 관계 당국 간에 즉각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 (1) 테러조직에 의해 자금모집 수단으로 사용되는 위장 조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2) 자산동결 조치 회피 등의 목적으로 테러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3)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은밀하게 유용되어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d) 의심스러운 NPO에 관한 외국의 정보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각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라 테러자금조달이나 기타 형태의 테러지원 관련 의심을 받고 있는 특정 NPO에 관하여 외국에서 정보를 요청

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D. 감독,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자원**

6. 각국은 NPO 부문의 감독, 모니터링 및 조사를 담당하는 당국에게 적절한 재정적,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권고 10에 대한 주석 (고객확인제도)

### A. 고객확인제도와 정보누설

1.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수립, 그 과정 또는 일회성 거래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통상, 계속적 거래 또는 일회성 거래를 불문하고, 다른 예외조항이나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고객 및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 (b) 권고사항 20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한다.
2. 권고사항 21은 금융기관, 이사, 직원이 금융정보가 FIU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확인(CDD)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무심코 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게 될 위험이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 사례로 보고되거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알게 되는 경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지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다.
3.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거래로 의심하는 경우, CDD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CDD 과정에서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의심거래보고 사실이 누설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되 STR은 반드시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CDD 이행 시 직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CDD -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자

4. 금융기관은 권고 10에 명시된 CDD이행과정에서 (a) 및 (b)항 이행 시,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자가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검증하고, 그 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여야 한다.

### C. 법인 및 법률관계에 대한 CDD

5. 법인 또는 법률관계인 고객에 대하여 CDD를 이행할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거래의 성격과 소유권 및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고객과 실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에 대해 아래 (a)와 (b)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다: 첫째, 고객에 관한 충분한 이해로 법인 및 법률관계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여 거래관계와 관련된 잠재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 절차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이러한 조건은 아마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 및 보완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검증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i) 명칭, 법률적 형태 및 존재의 증명 - 예를 들어, 고객의 명칭, 형태 및 존재를 증명하는 법인등록증, 자산증명서, 동업계약서, 신탁증서, 그 외 신뢰성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한 검증.

(ii) 법인 및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권한 (예, 회사 정관) 및 법인 또는 법률관계의 상위직급자 성명 (예, 회사 전무, 신탁 관리자).

(iii) 등록된 회사 주소 및, 주소가 다를 경우, 주 사업장의 주소.

(b) 아래 정보를 통해 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

(i) 법인의 경우

(i.i) 법인에 대한 최종 지배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의 신원 (그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적용됨 - 소유구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인 또는 법률관계 소유권을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없을 수 있음); 그리고

(i.ii) (i.i)항의 지배 지분 보유자가 실소유자임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 법인 및 법률관계에 대해 지배권을 다른 수단을 통해 행사하는 자연인의 신원.

(i.iii) 전 (i.i) 또는 (i.ii) 항에서 확인된 자연인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상위직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ii) 법률관계의 경우

(ii.i) 신탁 - 위탁자, 수탁자, (있을 경우) 보호자, 수익자 또는 수익자 집단과 신탁에 대해 (지배권/소유권 연쇄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타 자연인의 신원;

(ii.ii) 기타 법률관계 -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책인 자의 신원.

고객 또는 지배지분의 소유주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고 (증권거래소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해서든) 실소유자에 대해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공시 요건이 적용 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회사의 과반수소유 자회사인 경우, 주주 및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할 필요가 없다.

관련 신원확인 자료는 공공기록이나 고객, 기타 신뢰성 있는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 **D. 생명보험증권 수익자에 대한 CDD**

6. 생명보험 및 기타 투자 관련 보험업의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 및 실소유자에 대한 CDD 이행에 더해, 생명보험 및 기타 투자 관련 보험의 수익자(들)가(이) 확인/지정되자마자 아래 CDD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a) 수익자가 특정 명칭의 자연인, 법인 또는 법률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 명칭을 기록한다.
  - (b) 수익자가 어떠한 특성이나 신분(예, 보험사건 발생 시 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 (예, 유언장에 따라) 지정된 경우 - 금융기관이 만족스러운 정도로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여 보험금 지불시 수익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a)항 및/또는 (b)항에 의해 취합된 정보는 권고사항 11의 조항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7. 위 6(a) 및 (b)에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 수익자의 신원 검증은 보험금 지불시 이루어져야 한다.
8. 강화된 CDD조치 적용여부를 결정할 시, 금융기관은 생명보험 수익자를 관련 있는 위험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법인 또는 법률계약인 수익자가 고위험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경우, 강화된 CDD조치는 보험금 지불시 수익자의 실소유자를 식별 및 그 신원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9. 금융기관은 위 6.~8.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 **E. 이미 이행된 확인 및 검증에 대한 신뢰**

10. 권고 10에서 규정한 CDD는 금융기관이 매 거래시마다 반복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행해진 확인 및 검증조치에서 얻어진 정보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기존 CDD를 신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이 있거나 고객의 사업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계좌운용방식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이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다.

## F. 검증 시기

11.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고객 검증을 거래관계 수립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위 생명보험 수혜자에 관해 언급된 상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비대면 거래.
  - 증권 거래. 증권업의 경우 증권 회사 및 증권 중개소는 고객과 접촉할 당시 및 고객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되기 전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를 매우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12.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이 신원확인 이전에 거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위험 관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절차로서 거래 횟수, 유형 및/또는 액수에 대한 제한과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래 또는 복잡한 거래에 대한 감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G. 기존 고객

13. 금융기관은 중요도와 위험도에 근거하여 기존 고객에 대한 CDD를 적용하여야 하고, CDD 이행시기 및 취득된 정보의 적절성/타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CDD를 적절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 H. 위험 기반 접근

14. 아래 사항은 FATF 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침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유용한 지침에 해당하지만 포괄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 고위험

15.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높아 강화된 CDD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 유형, 국가 및 지리적 지역, 특정 재화, 서비스, 거래 및 운송채널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을 측정할 때 잠재적 고위험 상황은 (권고사항 12와 16에 나열된 상황에 더하여) 다음을 포함한다.

### (a) 고객 위험 요소

-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지리적 거리가

면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 고객이 비거주자인 경우
- 법인 및 법률관계가 자산보전수단인 경우
- 차명주주 또는 무기명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 현금 흐름이 많은 사업
- 회사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b) 국가 또는 지리적 위험 요소

- 상호평가, 상세평가보고서 또는 발표된 후속조치이행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출처에 의해 적절한 AML/CFT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국가
- 제재조치, 통상금지 및 기타 유사한 제재를 받은 국가 (예, UN으로부터)
- 신뢰성 있는 출처에 의해 중대한 수준의 부패 또는 기타 범죄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
- 신뢰성 있는 출처에 의해 테러행위에 대한 자금조달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지정된 테러조직이 국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리적 지역

(c) 재화, 서비스, 운송채널 관련 위험 요소

- 프라이빗 बैं킹 (PB)
- 익명 거래 (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비대면 거래 관계 및 거래
- 무명 및 비협력관계의 제3자로부터의 지급금

## 저위험

16.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이 낮은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각국은, 적절한 위험 분석이 이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금융기관이 간소화된 CDD를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 할 수 있다.

17. 고객유형, 국가 및 지리적 지역, 특정 재화, 서비스, 거래 및 운송채널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을 측정할 때 잠재적 저위험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고객 위험 요소

- 금융기관 및 DNFBP - FATF권고사항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

러자금조달 방지 의무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의무 이행을 위해 권고사항에 따라 효과적인 감독 및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경우

-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소유자에 관하여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할 공시의무가 있는 상장기업
- 행정기관 및 공사

(b) 재화, 서비스, 운송채널 관련 위험 요소

-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1,000 USD/EUR 이하이거나 1회 납부액이 2,500 USD/EUR 이하인 생명보험
- 해약조약이 없고 보험 증권이 담보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의 연금보험
- 피고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연금,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보험계약으로써,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불되며 보험 약관상 이익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적절히 정의되고 제한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특정 유형의 고객에게 제공하여 금융소외자 포용 목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

(c) 국가 위험 요소

- 상호평가나 상세평가보고서 등의 신뢰성 있는 출처에 의해 효과적인 AML/CFT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 신뢰성 있는 출처에 의해 부패 및 기타 범죄 활동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국가

국가 및 금융기관은 위험 평가시 국내 각 지방, 지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변수들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18. 신원 확인·검증 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았다고 하여 모든 유형의 CDD, 특히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에서도 자동으로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니다.

## 위험 변수

19.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금융기관은 고객, 국가, 상품 및 서비스, 운송채널 위험성 등과 관련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수들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CDD조치 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변수들의 예,

- 거래 또는 거래관계의 목적

- 고객이 예치하는 자산의 수준 또는 거래규모
- 거래관계의 주기 또는 지속기간

## 강화된 CDD조치

20. 금융기관은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모든 복잡하고 비정상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와 비정상적 패턴을 가진 거래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그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가 높은 경우, 확인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강화된 CDD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거래 및 행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관계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고위험 거래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강화된 CDD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고객에 대해 추가적 정보 (예, 직업, 자산규모, 인터넷이나 공공기록물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등)를 취득하고, 고객과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확인 정보를 좀 더 정기적으로 갱신
- 사업관계의 의도된 성격에 관한 정보 취득
- 고객의 자금 원천 및 재산에 관한 정보 취득
- 예정된 또는 이미 수행된 거래의 목적에 관한 정보 취득
- 사업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한 상위 직급자의 승인 취득
- 규제 장치의 수와 시간을 늘려 사업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거래 패턴을 선택
- 유사한 CDD 기준이 적용되는 은행에 개설된 고객계좌에서 최초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간소화된 CDD조치

21.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간소화된 CDD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간소화된 조치는 낮은 위험요소에 비례하여야 한다(예, 간소화된 조치는 고객수용조치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가능한 예는 아래와 같다.

- 거래관계 설립 후 고객과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 (예, 거래계좌가 현금한도 이상인 경우)
- 고객 신원정보 갱신 주기를 감소
- 합리적인 현금 한도에 근거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정도 및 거래의 상세 검토 완화

- 거래관계의 목적 및 의도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거래 유형 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추론

간소화된 CDD 조치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의심이 있거나 특별한 고위험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금액한도

22. 권고사항 10에 근거한 일회성 거래금액의 한도는 15,000USD/EUR이다. 지정된 금액한도 이상인 금융거래는 일회성 거래 또는 연결된 수회의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 지속적인 고객확인

23. 금융기관은 CDD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데이터, 정보를 현존하는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갱신하고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

## 권고 12에 대한 주석 (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

금융기관은 생명보험의 수익자 및/또는 수익자의 실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늦어도 지불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험이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은 표준 CDD조치 이행에 더하여

- (a) 보험금 지급 전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 (b) 보험계약자와의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강화된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거래보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 권고 13에 대한 주석 (환거래은행)

금융기관이 (a)-(e)의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유사한 거래관계란, 예를 들어, 국제 금융기관을 주인으로 하는 또는 고객을 위해 설립된, 증권거래 또는 자금이체를 위해 설립된 것을 포함한다.

지불계좌(*payable-through-accounts*)란, 제3자가 자기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s*)를 말한다.

**권고 14에 대한 주석**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MVTs))**

국가는 그 국가에서 이미 (FATF 권고사항에 정의되어 있듯이)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된,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 또는 등록 하에 MVTs를 수행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FATF 권고사항의 의무사항들을 이미 적용받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

## 권고 16에 대한 주석 (전신송금)

### A. 목표

1. 권고 16은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자들이 자금 이전을 위하여 전신송금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또한 그러한 접근이 이뤄졌을 경우 이러한 오용을 찾아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전신송금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기본정보가 아래(a-c)를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a) 법집행 및 수사 기관의 테러리스트 또는 기타 범죄자 발견, 수사, 기소와 그 자산의 추적;
  - (b) FIU의 의심 또는 비정상 행위 분석,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제공;
  - (c) 송금인 거래은행, 중개은행 및 수취인 거래은행의 의심거래 확인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며,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관련 UN 안보리 결의(예, 결의1267호(1999)와 후속 결의, 결의1373호(2001)에 따라 동결조치를 시행하고 지정된 개인 및 단체와의 거래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모든 전신송금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액 전신송금에 의한 잠재적 테러자금조달 위험으로 인해, 각국은 불법(지하)거래 형성의 위험성 및 금융포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액한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거나 단 하나의 운영절차를 요구하여 결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FATF의 목적은 아니다.

### B. 범위

3. 권고 16은 serial 지급과 cover 지급을 포함한 국내외 전신송금에 적용된다.
4. 권고 16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신용·직불·선불카드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체(이체정보와 함께 신용·직불·선불카드 번호가 따라가야 함). 그러나 신용·직불·선불카드의 사용이 개인간 전신송금을 실행하기 위한 결제 거래인 경우는 권고 16에 포함되며 메시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b) 송금인과 수취인이 금융기관 본인인 경우, 금융기관간의 이체 및 결제.
5. 각국은 (USD/EUR 1,000를 넘지 않는) 국외 전신송금에 대해 최소 (de

minimis) 금액한도를 채택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a) 각국은 이러한 이체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다음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i) 송금인명; (ii) 수취인명; 그리고 (iii) 각각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는 없으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 (b) 각국은 금액한도 이하인 국외 계좌에서 들어오는 전신이체에도 송금인에 관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C. 적법한 국외 전신송금**

6. 적법한 전신송금과 동반되는 정보는 다음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 (a) 송금인의 성명/명칭;
- (b) 거래 진행에 사용된 송금인 계좌번호;
- (c)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객 식별 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 (d) 수취인명;
- (e) 거래 진행에 사용된 수취인 계좌번호.

7. 계좌가 없을 경우, 거래 추적이 가능하도록 고유거래조회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8. 한 송금인으로부터 여러 개의 국외 전신송금이 수취인에게 묶음파일로 일괄 전달되는 경우, 위 6문단의 송금인 정보 요건에서 면제된다. 단, 송금인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를 포함하고 (7문단), 묶음파일이 송금인에 관한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와 수취인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수취인 국가에서 완전히 추적 가능해야 한다.

### **D. 국내 전신송금**

9. 국내 전신송금을 동반하는 정보는 국외 전신송금에서와 같이 송금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수취 금융기관 및 권한당국에 다른 수단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자의 경우 지시금융기관은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만 포함하면 된다. 단, 그 번호 또는 식별자를 통해 송금인 혹은 수취인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10. 지시 금융기관은 수취 금융기관 또는 관련 권한당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안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러한 정보가 즉시 제공되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 **E. 지시 및 중개, 수취 금융기관의 책임/의무**

### **지시 금융기관**

- 11.** 지시금융기관은 적법한 전신송금이 필요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필요한 수취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12.** 지시금융기관은 적용되는 금액한도 이하의 국외 전신송금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명칭 및 각각의 계좌번호 또는 고유거래조회번호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 13.** 지시금융기관은 수집된 모든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권고 11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 14.** 지시금융기관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신송금을 할 수 없어야 한다.

### **중개 금융기관**

- 15.** 국외 전신송금에서, 전신송금의 중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은 전신송금을 동반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16.**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 국외 전신송금과 동반하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관련 국내 전신송금과 계속 남아있을 수 없는 경우, 수신측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인 금융기관 또는 다른 중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7.** 중개금융기관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해 필요한 정보가 없는 국외 전신송금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straight-through processing과 일관되어야 한다.
- 18.** 중개금융기관은 효과적인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 (i)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필수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언제 이행, 거절, 또는 중단하며 (ii)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취 금융기관

19. 수취 금융기관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없는 국외 전신송금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할시 사후 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할 수 있다.
20. 적법한 전신송금일 경우, 수취 금융기관은 이전에 검증되지 않은 수취인 신원을 검증하고, 그 정보를 권고 11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21. 수취 금융기관은 효과적인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 (i)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 관한 필수 정보가 없는 전신송금을 언제 이행, 거절, 또는 중단하며 (ii)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F.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업자

22. MVTS 제공자는 영업하는 국가에서 권고 16의 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준수해야 한다. MVTS 제공자가 전신송금의 지시 및 수취인 측 모두를 관리하는 경우, MVTS 제공자는:
  - (a) 지시 및 수취인 측 모두의 정보를 고려하여 STR 보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b) 의심스러운 전신송금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STR을 보고하고 관련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권고 17에 대한 주석 (제3자 의존)

1. 본 권고는 아웃소싱이나 대리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 의존 시나리오에서 제3자는 권고 10 및 11에 따라 CDD와 기록보관 의무 대상이어야 하며 규제, 감독 및 모니터링 대상이어야 한다. 제3자는 대개 고객과 대행을 맡긴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관계와는 별개로 해당 고객과 기존 거래관계가 있어서 CDD를 이행할 때 자체 내부절차를 적용한다. 이는 아웃소싱이나 대리인 시나리오와 대비되는 것으로, 외주업체는 위임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그 내부절차에 따라 CDD조치를 적용하며,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하여 위임금융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2. 권고 17에서 *관련 권한당국*이란, (i) 그룹수준의 그룹 정책 및 규제의 이해와 관련된 본사 국가기관과 (ii) 지사/자회사와 관련된 현지 국가기관을 말한다.
3. *제3자*란 감독·모니터링 대상이며 권고 17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 또는 DNFBP를 말한다.

## 권고 18에 대한 주석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1.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적절한 준법 관리체계를 비롯한 내부 정책, 절차와 통제장치 개발 및 직원 채용시 높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선별절차
  - (b) 지속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
  - (c)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감사기능
2. 조치의 규모 및 수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와 거래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3. 준법 관리체계는 관리자급 준법감시인 임명을 포함해야 한다.
4. 금융그룹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로그램은 해당 금융그룹의 모든 지점과 과반수소유 자회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위 (a)-(c)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지점 및 과반수소유 자회사의 업무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점 및 과반수소유 자회사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CDD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범그룹 준수, 감사 및/혹은 AML/CFT 기능은 고객 및 계좌, 거래 정보와 함께 지점과 자회사로부터 AML/CFT의 목적으로 필요 시 제공되어야 한다. 비밀보장 및 교환된 정보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해외 사업장의 경우, 현지 국가의 AML/CFT 최소요건이 본사 국가보다 덜 엄격할시, 금융기관은 현지 국가에 있는 지점 및 과반수소유 자회사가 현지 국가의 법과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본사 국가의 요건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지 국가가 위 조치의 제대로 된 이행을 허용치 않을 경우, 금융그룹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추가적 조치를 적용하고 본사 국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본사 국가의 권한당국은, 금융그룹에게, 적절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의 영업 정지 요구를 포함, 금융그룹에 대한 추가적 통제를 포함한 추가적 감독행위를 고려해야 한다.

## 권고 19에 대한 주석 (고위험 국가)

1. 금융기관이 실행할 수 있는 강화된 확인조치는 권고 10에 대한 주석 20문단과 위험을 완화하는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2. 국가에서 대응조치로 취할 수 있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 및 유사한 위험 완화 효과를 갖는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 (a) 금융기관에 강화된 확인조치의 특정 요소를 적용하도록 요구.
  - (b) 강화된 관련 보고 메커니즘 도입 또는 금융거래의 체계적 보고 도입.
  - (c) 해당국가의 금융기관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 거절, 또는 그 외에 적절한 AML/CFT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가의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을 고려.
  - (d) 해당국가에 금융기관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해당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적절한 AML/CFT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가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 고려.
  - (e) 확인된 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 (f) 금융기관이 CDD절차의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국가에 소재한 제3자에 의존을 금지.
  - (g) 금융기관이 해당국가에 있는 금융기관과의 제휴관계를 검토 및 수정, 또는 필요 시 종료할 것을 요구.
  - (h) 해당국가에 근거지를 둔 금융기관의 지사 및 자회사에 대해 더 높은 감독 검사 및/또는 외부감사 기준 적용.
  - (i) 해당국가에 소재한 지점 및 자회사를 둔 금융그룹에 대해 더 높은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금융기관이 외국 AML/CFT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권고 20에 대한 주석 (의심거래 보고)

1. 권고 20에서 범죄(활동)이라 함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범죄행위 또는, 최소한 권고 3에 따라, 전제범죄를 구성했을 범죄를 말한다. 각국에게 두 가지 대안 중 전자를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2. 권고 20에서 테러자금조달이라 함은, 특정 테러 행위 또는 행위들과의 연관성이 부재하더라도, 테러조직과 개별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말한다.
3. 미수 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혐의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4. 보고 조건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여야 하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든 다른 이유로든, (이른바 “간접 보고“), 간접적 또는 내재된 의무는 적절하지 않다.

## 권고 22와 23에 대한 주석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1. 지정된 거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다
  - (권고 22에서) 카지노 - USD/EUR 3,000
  - (권고 22 및 23에서) 현금 거래에 관여한 귀금속상 및 보석상 - USD/EUR 15,000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거래에는 일회성 금융거래 또는 연결된 분할거래도 포함된다.
  
2.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해설주석은 (해당되는 경우) DNFBPs에도 해당된다. 각국은 권고 22와 23을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및 기타 지정된 비금융 사업 및 전문직을 위한 법률 또는 집행력 있는 수단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사업 및 전문직의 근본적인 활동이 법률 또는 집행력 있는 수단에 의해 다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권고 22에 대한 주석**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고객확인)**

1.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매수인 및 매도인 모두에 대하여 권고 1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카지노는 고객이 USD/EUR 3,000 이상의 거래에 참여할 경우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비롯한 권고 10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지노 입구에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은 카지노가 특정 고객에 관한 CDD 정보를 고객이 카지노에서 하는 거래와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23에 대한 주석**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기타 수단)**

1.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는 비밀유지의무 또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2. 사안이 변호사 특권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국이 판단한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 등이 (a) 고객의 법적 지위 확인과정이나 (b) 사법, 행정, 중재, 중개 절차에 관하여 고객을 변호하거나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고객으로부터 또는 고객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포함된다.
3. 각국은 만약 자율규제기구와 FIU 사이에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변호사, 공증인 등 법률전문가와 회계사로 하여금 자율규제기구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다.
4.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경우 이는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다.

## 권고 24에 대한 주석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1. 권한당국은 실소유자와 지배구조 그리고 국내에 설립된 기타 법인(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현재정보를 적시에 입수하거나 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아래에 제시된 최소한의 의무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각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 법인의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각국은 아래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 (a) 국내 법인의 여러 종류, 형태, 및 기본 특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장치.
    - (b) (i) 이들 법인의 설립절차와 (ii) 소유자 및 실소유자 정보의 입수 및 기록 절차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장치;
    - (c) 위 정보를 공개하는 장치;
    - (d) 국내에 설립된 각종 법인과 연관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는 장치;
- A. 기본 정보**
3. 권한당국은 기업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기업에 관한 특정 기본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법적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포함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현황과 권한, 주주와 이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4. 한 국가에 설립된 모든 기업은 등기소에 등기되어야 한다. 실소유자 정보 입수 및 기록을 위해 어떤 조합의 장치가 사용되었든 (아래 B 참조), 필수 전제조건으로 기업이 기본적으로 입수하고 기록해야할 기본 정보가 있다. 기업이 입수 및 기록해야할 최소한의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다:
    - (a) 기업명, 기업설립 증명, 법적 형태 및 자격,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 기본 지배구조 (예,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 이사명단;
    - (b) 주주와 회원들의 이름과 각 주주의 보유지분과 (해당 의결권의 성격을 포함한) 주식의 수, 주식 및 지분의 유형이 기록된 명부.
  5. 국가등기소는 위 4(a)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기본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국가등기소는 위 4(b)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기본정보를 국내 등록된 사무실 또는 등기소에 통지한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기업 또는 등기소가 실소유자 정보를 국내에 보관하는 경우, 주주 명부가 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이것은 요청 시 기업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 B. 실소유자 정보

7. 각국은 (a) 기업이 자사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 및 국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또는 (b)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를 적시에 알아낼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7문단의 요구사항에 맞으려면, 각국은 다음 메커니즘을 하나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a) 기업 또는 국가등기소가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 및 보관하도록 요구;
  - (b)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 및 보관하기 위해 기업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c) 기존 정보 이용. 다음을 포함: (i) 권고 10 & 22에 따라 금융기관 및/또는 DNFBPs가 입수한 정보; (ii) 다른 권한당국이 보유한 기업의 법률상 소유자 및 실소유자에 관한 정보 (예, 국가등기소, 조세당국, 금융 또는 기타 규제 당국); (iii) 위 Section A에서 요구된 기업이 보유한 정보; (iv) (증권거래소의 규정 또는 법률 또는 기타 집행력 있는 수단의) 공시 의무에 의해 실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가용정보.
9. 위 메커니즘 중 어느 것을 이용하였는가와 관계없이, 각국은 기업이 실소유자를 알아내는 일에 있어서 권한당국과 가능한 한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한명 이상이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에 대한 가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권한을 받고, 권한당국에게 책임을 지고, 정부당국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또한
  - (b) 국내 DNFBP가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에 대한 가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권한을 받고, 권한당국에게 책임을 지고, 또 정부당국을 지원하도록 요구;
  - (c) 국가가 협력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기타 유사한 조치.

10. 위에 언급된 자와 정부당국, 기관들, 및 기업 자체 (또는 그 관리자, 청산인 또는 기업의 해산에 관련된 자)는 모두 기업이 해산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또는 기업이 전문 중개인 또는 금융기관의 고객이길 중단하는 날로부터 5년간 앞서 말한 정보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C. 정확한 최신 정보의 적시 접근

11. 각국은 기업등기소에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기본정보가 정확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각국은 7문단에 언급된 정보가 정확하며 가능한 한 최신상태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변경 후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12. 권한당국, 그리고 특히 법집행기관은, 관련자가 보유한 기본 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13. 각국은 등기소가 보유한 공공정보 및 최소한 위 4(a)항에 따른 정보에 금융기관 및 DNFBPs, 기타 외국 권한당국이 시의적절한 접근성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각국은 위 4(b)항에 따른 정보에 금융기관 및 DNFBPs가 시의적절한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D. 투명성 저해요인

14. 각국은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하나 이상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무기명주식 금지; (b) (무권화 등을 통해) 기명주식 혹은 주식매입권으로 전환; (c)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의 소유를 규제 대상 금융기관 또는 전문중개인만 허용함으로써 유통정지; 또는 (d) 무기명주식 및 무기명주식 매입권을 소유한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에 신고할 의무 부과 및 신고를 받은 기업은 해당 주주의 신원 기록 의무화.
15. 각국은 명목상 주주 및 명목상 이사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명목상 주주 및 명목상 이사에게 실제 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을 기업 및 관련 등기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정보가 관련 명부에 포함될 것을 요구; 또는 (b) 명목상 주주 또는 명목상 이사가 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명목상 주주 또는 이사임을 국가등기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등기소로 하여금 실제소유자 및 실제이사의 신원정보

기록을 보유하여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E. 기타 법인**

- 16.** 재단, 안슈탈트, 유한책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각국은 이들의 유형과 구조를 고려하여 기업과 유사한 조치와 의무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 17.** 기타 종류의 법인과 관련하여 각국은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법인의 유형과 구조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종류의 법인과 연계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최소한 비슷한 종류의 기본정보가 해당 법인에 의해 기록되고 정확하고 최신상태로 유지되며, 권한당국이 해당 정보를 적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이와 같은 기타 법인과 연관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검토하고 위험도에 따라 권한당국이 해당 법인에 대한 적합, 정확한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에 적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F. 법적 책임과 제재**

- 18.** 본 주석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과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제재조치도 명백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G. 국제협력**

- 19.** 각국은 권고 37 및 40에 따라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건설적,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a) 국가등기소가 보유한 기본정보에 대한 외국 관련기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b) 주주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c)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 외국 기관을 대신해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각국은 기본정보 및 실소유자 정보에 관한 요청 또는 해외거주 실소유자의 위치 추적 지원 요청에 대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받은 도움의 품질을 모니터하여야 한다.

## 권고 25에 대한 주석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1. 신탁의 준거법 국가는 명시신탁에 대하여 수탁인으로 하여금 신탁과 관련된 적합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실소유자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실소유자 정보에는 위탁자, 다른 수탁자, 보호인 (만약 있다면), 수익자 및 수익자 집단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은 수탁인으로 하여금 투자자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신탁서비스 제공자 및 신탁 관련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각국은 수탁인으로 하여금 수탁인으로서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금액한도를 넘는 일회성 거래를 수행할 적에 자신의 지위를 금융기관 및 DNFBP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인이 신탁과 관련된 정보를 권한당국에 제공하는 것, 또는 금융기관 및 DNFBP의 요청에 따라 실소유자 정보 및 거래관계의 조건 하에 관리되는 신탁 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또는 집행력 있는 수단으로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각국이 신탁과 관련된 개인, 단체 및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신탁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장려되며, 신탁 및 수탁인, 신탁 자산의 잠재적 정보출처로는 :
  - (a) 국가등기소 (예, 중앙 신탁등기소, 신탁자산등기소) 또는 토지, 자동차, 주식 등 자산등기소
  - (b) 신탁 및 수탁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기타 권한 있는 당국 (예, 신탁과 관련된 자산과 소득 정보를 수집하는 조세 당국)
  - (c)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변호사, TCSP 등을 포함한 기타 신탁서비스 제공자
4. 권한당국, 특히 법집행 당국은 수탁인이 보유한 정보, 특히 금융기관 및 DNFBP가 보유한 (a) 실소유자 정보, (b) 수탁인 거주 정보, 그리고 (c) (수탁인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일회성 거래를 수행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DNFBP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적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5. 신탁을 업으로 하는 수탁자에게는 1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를 임무 종료 후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각국은 신탁을 업으로 하지 않는 수탁자 및 3문단에 언급된 개인, 단체 및 정부기관에게도 최소한 5년 동안 동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장려된다.

6. 각국은 위 1문단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변경이 있을 시 합리적인 시일 내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7. 각국은 권고 10항 및 22항의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및 DNFBP가 3문단에 언급된 개인, 단체 및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탁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각국은, 본 권고의 맥락에서, 신탁을 법적으로 승인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각국은, (관습법 또는 판례법 등에 의해) 1, 2, 6 문단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적절한 의무사항이 존재할 경우, 1, 2, 6 문단의 사항을 법령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법률관계

9. 각국은 신탁과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형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비슷한 수준의 투명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과 비슷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최소한 위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신탁 정보가 기록되며,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권한당국이 동 정보를 적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협력

10. 각국은 권고 37 및 40에 따라 실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신탁 및 기타 법률관계 정보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을 신속하고 건설적,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a) 외국 권한 당국이 등기소 또는 국내 기타 당국이 보유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b) 국내에 있는 신탁 및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c) 국내법에 따라 당국의 권한을 통해 외국 당국을 위해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 법적책임 및 제재

11. 각국은 해설주석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가 있게 하고 수탁인이 위의 1, 2, 6 그리고 (만약 적용된다면) 5 문단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형사·민사·행정상 제재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권한 당국에게 1과 5문단에 언급된 신탁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적, 비례적, 억제적 형사·민사·행정상 제재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권고 26에 대한 주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감독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1. 감독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이란, (a) 감독기관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AML/CFT 감독에 자원을 할당하는 일반적 절차와 (b) AML/CFT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는 감독기관의 특별 절차를 말한다.
2. 금융 기관의 AML/CFT시스템 및 규제 감독에 대해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면, 감독기관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문으로 자원을 이동할 수 있다. 그 결과, 감독기관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감독기관은 (a) 국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하며 (b) 금융기관 또는 그룹의 준법감시기능의 수준을 포함한 감독대상 기관의 고객,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국내 및 국제 위험에 대한 정보를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기관/그룹의 내외부 AML/CFT 감독의 빈도와 강도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와 기관/그룹의 리스크 프로파일 감독평가에 확인된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그리고 국내에 존재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그룹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프로파일 (불이행 위험 포함) 평가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 감독을 위한 국내 관습에 따라, 정기적 검토와 금융 기관/그룹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의 검토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상황과 위험요인의 전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4.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관/그룹에 대한 AML/CFT 감독은 금융기관/그룹이 RBA하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재량의 위험평가와 정책, 내부규제 및 절차의 적절성과 이행에 대한 검토를 적절한 방식으로 포함해야 한다.
5. 이러한 원칙들은 모든 금융 기관/그룹에 적용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AML/CFT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다양성과 수 등 금융기관/그룹의 특성과 RBA에 대한 재량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의 자원

6. 각국은 금융 감독기관이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부당한 위압 또는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운용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 (비밀유지 포함)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적이고 적절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권고 28에 대한 주석 (DNFBPs에 대한 규제와 감독)

1. 감독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이란, (a) 감독기관 또는 SRB가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AML/CFT 감독에 자원을 할당하는 일반적 절차와 (b) DNFBP 감독/모니터링에 AML/CFT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는 특별 절차를 말한다.
2. 감독기관 또는 SRB는 효과적인 AML/CFT 감독/모니터링을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DNFBP의 특성, 특히 다양성과 그 수를 고려하여, DNFBP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의 빈도와 강도를 정해야 한다. 이는 (a) 국내에 존재하고 (b) DNFBP와 그 고객,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한다.
3. DNFBP의 AML/CFT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감독기관 또는 SRB는 해당 DNFBP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프로파일과 RBA 하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었는지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4. 감독기관 또는 SRB는 (감시 및 제재 권한을 포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권한과 충분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가져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 (비밀유지 포함)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적이고 적절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권고 29에 대한 주석 (금융정보분석원)

### A. 개요

1. 본 주석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 권한과 역할을 설명하며 (국제)기준에 포함된 의무를 한층 분명하게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한 국가의 AML/CFT 관리망의 일부이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권한 당국의 업무를 지원한다. 다양한 FIU 모형이 있음을 감안하여, 권고 29는 한 국가의 특정 모형 선택을 숙단하지 않고 모든 모형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 B. 역할

#### (a) 수령

2. FIU는 보고기관으로부터 보고(disclosures)를 받는 중앙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정보는 최소한 권고 20과 23에 규정된 의심거래보고와 국내법에 규정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예, 고액현금거래보고, 전신환송금 보고와 금액 한도를 근거로 한 신고/공개).

#### (b) 분석

3. FIU 분석은 FIU가 수령하고 보유한 정보에 가치를 더해야한다. 이러한 분석은 모든 정보를 고려하면서도, 보고받은 정보의 유형·분량과 제공 후 예상되는 이용법에 따라, 각각의 보고된 정보 또는 적절히 선정된 정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각 FIU가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적절히 연결 짓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장려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도구는 사람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석의 요소를 전부 대신할 수는 없다. 각 FIU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석을 해야 한다:

- 운영 분석은 이용(입수) 가능하고 취득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을 식별하고 (예, 사람, 자산, 범죄 네트워크 및 조직), 특별한 활동 또는 거래를 추적하며, 대상과 범죄, 자금 세탁, 전제범죄 또는 테러자금조달 범죄수익 간의 링크를 확립한다.
- 전략 분석은 다른 권한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여 이용(입

수) 가능하고 취득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된 동향 및 패턴을 식별한다. 동 정보는 FIU 나 다른 국가 단체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협 및 취약성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전략 분석은 FIU, 또는 AML/CFT제도 내의 기타 단체의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c) 제공

4. FIU는 권한당국에게 정보 및 분석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혹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공은 안전하고 보안된 전용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자발적 제공:** FIU는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 테러자금조달을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권한당국에게 정보 및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FIU 분석에 입각하여, 정보 제공은 선택적/엄격해야하며 정보를 수령하는 당국이 관련된 사건/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요청 시 제공:** FIU는 권고 31에 따라 권한 당국의 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FIU가 권한당국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을 시, 분석을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또는 요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각 FIU가 결정한다.

### C. 정보 접근

#### (a) 보고기관으로부터 추가 정보 취득

5. 보고기관들이 FIU에 보고하는 정보 외에도 FIU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FIU가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관이 FATF 권고사항(10, 11 및 22)에 따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b) 기타 출처 정보에 대한 접근

6. FIU는 분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폭넓은 금융, 행정 및 법집행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개/공공 정보와 기타 당국이, 또는 당국을 대신하여, 수집하거나 유지한 정보와, 때에 따라 상업용 자료를 포

함한다.

#### **D. 정보 보안 및 비밀**

7. FIU가 수령, 처리, 보유,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보안상 보호되고, 합의된 절차·정책·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만 교환·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은 물론, 처리·보관·제공·보호 절차를 포함하여 정보의 보안 및 비밀에 대한 규정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FIU는 직원들이 필요한 등급의 기밀취급 허가를 취득하고 민감정보·기밀정보의 처리·제공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FIU는 IT시스템을 포함하여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책임져야 한다.

#### **E. 운영 독립성**

8. FIU는 독립적인 자치 운영권을 갖춰야 한다. 즉, FIU는 특정 정보의 분석, 요청 또는 제공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포함한 FIU의 기능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FIU는 권한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9. FIU는 현존하는 정부기관의 일부로 설립되어도 된다. FIU가 현존하는 기관 내에 설립된 경우, FIU의 핵심 기능은 다른 기관의 기능과는 대조되어야 한다.
10. FIU는 그 자율과 독립을 보장받고 사명을 효과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제공 받아야 한다. 각국은 FIU 직원이 (비밀유지 포함)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적이고 적절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1. FIU는 정보교환에 관해 국내 다른 기관 또는 외국 당국과 독립적으로 합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 **F. 부적절한 영향 또는 간섭**

12. FIU는 운영 독립성을 해치는 정치, 정부, 산업의 부적절한 영향 또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FIU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G. 에그몽 그룹**

- 13.** 각국은 FIU가 에그몽 그룹의 회원 규약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FIU간의 정보교환원칙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동 문서는 FIU의 역할과 기능 및 FIU간의 정보교환 메커니즘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FIU는 에그몽 그룹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 **H. 고액 거래 보고**

- 14.** 각국은 금융기관 및 DNFBP가 고정된 금액 이상의 모든 국내/국제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의 실행가능성과 실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 권고 30에 대한 주석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1. 자금세탁, 전제범죄 및 테러자금조달이 금융수사를 통해 적절히 수사 받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각국은 또한 몰수 대상인,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식별, 추적, 동결,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당국을 하나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2. '금융수사'란, 범죄활동과 관련된 재무 조사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범죄 네트워크 및/또는 범행 규모의 정도 확인;
  - 몰수 대상인,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범죄수익, 테러자금 또는 기타 자산 확인 및 추적;
  - 형사소송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 확보.
3. '병행 금융수사'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또는 전제범죄에 대해 (전통적인) 범죄수사와 병행하여 수행되는 금융수사를 말한다. 전제범죄 법집행수사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다른 수사가 병행/진행되는 동안에도 수행할 수 있거나 다른 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사건을 회부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당국이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혐의자 체포 및/또는 자금 압수를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 입법적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운송지연이나 위장수사와 같은 절차는 불가능하다.
5. 권고 30은 그 자체로는 법집행기관이 아니지만 전제범죄의 금융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권고 30에 포함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당국에게도 적용된다.
6. 법집행 권한을 가진 부정부패방지집행 당국은 권고30의 부패범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를 조사하도록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런 기관은 자산을 확인, 추적, 동결, 몰수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7. 위에 언급된 법집행기관 및 기타 권한 당국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각국이 금

용수사 시 다기능 그룹을 사용할 때이다.

8. 법집행기관 및 기소기관은 적절한 재정적,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져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 (비밀유지 포함)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적이고 적절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권고 32에 대한 주석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 A. 목적

1. 권고 32는 테러리스트 및 기타 범죄자들이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BNI)을 국경간 물리적으로 반출입함으로써 자금을 조성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각국이 다음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수립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현금 및 BNI의 국경 간 직접 반출입 적발; (b) 테러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금 및 BNI 반출입의 중단 또는 억제; (c) 허위 신고되거나 공개된 현금 및 BNI의 반출입을 중단 또는 억제; (d) 허위신고 및 공개에 대해 적절한 제재 부과; (e) 테러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과 관련 있는 현금 및 BNI의 몰수.

### B. 현금 휴대반출입에 대처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제도 유형

2. 각국은 아래 제도 유형 중 하나를 실행하여 권고 32 및 본 주석서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단, 각국은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BNI)의 국가 간 반입과 반출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 제도

3. 정해진 신고기준금액 USD/EUR 15,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BNI의 국경간 물리적 반출입을 행하는 모든 자는 지정된 관계당국에 사실에 근거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국은 다음 세 가지 신고 제도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i) 모든 여행자에 대한 서면 신고제도; (ii)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및 BNI를 반출입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면 신고제도; (iii) 구두로 신고하는 제도. 물론 혼합된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a) 모든 여행자에 대한 서면 신고제도: 모든 여행자가 입국 전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제도. 이런 신고서는 일반 또는 세관 신고서의 질문(항목)들을 포함한다. 여행자들은 실제로 현금 또는 BNI 휴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 또는 “아니요” 칸에 체크 표시).

(b)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 여행자에 대한 서면 신고제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제도. 실제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휴대하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 (c) *모든 여행자에 대한 구두 신고제도*: 모든 여행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신고해야하는 제도. 이는 보통 통관수속시 신고통로 (과세검사대) 또는 무신고통로 (면세검사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행자 본인의 선택을 구두 신고로 여기는 것이다. 여행자는 실제로 서면 신고를 하지 않으나 세관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요구된다.

## 공개 제도

4. 각국은 요청 시 여행자가 당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여행자는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여행자는 요청 시 관계당국에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 C. 두 제도에 적용되는 추가적 요소

5.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이행하는지와 상관없이 각국은 자국이 선택한 제도에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a) 신고/공개제도는 현금 및 무기명 지급수단(BNI)의 반입 및 반출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 (b) 현금 및 BNI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공개가 적발되면, 지정된 관계당국은 반출입을 행하는 자로부터 현금 및 BNI의 출처와 의도된 사용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 (c) 신고/공개 과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의심스러운 국경 간 반출입에 대한 FIU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FIU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d) 각국은 권고 32의 이행과 관련하여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기타 관계당국 간 적절한 국내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e)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서, 관계 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현금 및 BNI의 반출입을 중단 또는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i)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ii) 허위 신고/공개가 적발되는 경우.

- (f) 신고/공개 제도와 관련하여 권고 36-40에 따라 국제적 협조 및 공조가 최대한 가능해야 한다. (i) 기준금액 USD/EUR 15,000를 초과하는 신고/공개, 또는 (ii) 허위 신고/공개, 또는 (iii)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 (g) 각국은 정보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보호장치 하에 권고 32를 이행하고 (i) 국가 간 재화 및 서비스 무역대금결제, 또는 (ii)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어떻게든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D. 제재**

6. 허위 신고 또는 공개를 하는 자에게 실효성 있고 위반 수준에 비례하며 억제력이 있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테러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현금 및 BNI의 국경 간 물리적 반출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고 위반수준에 비례하며 억제력이 있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며, 권고 4와 일관되는 현금 및 BNI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7. 권고 32의 이행을 책임지는 당국은 적절한 재정적,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져야 한다. 각국은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 (비밀유지 포함)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도덕적이고 적절히 숙련되었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E. 금, 귀금속, 보석**

8. 금, 귀금속, 그리고 보석은 유동성이 크고 특정 상황에서 교환 및 가치 이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본 권고사항에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품목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각국은 금, 귀금속 또는 보석의 비정상적인 국경간 이동을 적발했을 경우, 반출 및 반입 국가의 세관이나 기타 관계당국에 적절히 통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출처, 목적지, 반출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권고 38에 대한 주석**  
**(국제사법공조: 동결과 몰수)**

1. 각국은 몰수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집행, 건강, 교육 및 기타 적합한 목적을 위해 보관될 수 있도록 몰수자산기금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몰수된 자산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며 몰수가 법집행 공동협력의 직간접적인 결과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2. 기소전몰수 소송절차 기반의 공조요청의 경우, 각국은 이러한 요청 전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가해자의 사망, 도주, 부재 불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권고 40에 대한 주석 (기타 국제협력)

### A. 모든 형태의 국제협력에 적용되는 원칙

#### 공조요청기관의 의무

1. 공조 요청 시 권한당국은 요청사항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예상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급여부를 포함한 완벽한 사실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청당국'(공조를 요청하는 당국)은 입수한 정보의 활용과 유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피요청당국'(공조를 요청 받은 당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 부당한 제한조치

2. 각국은 정보교환 혹은 지원 제공을 금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권한당국은 다음을 이유로 지원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요청사항이 재정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및/또는
  - (b) 금융기관 또는 DNFBP가 비밀 혹은 기밀 유지에 대한 법적의무를 지는 경우 (요청된 정보에 대해 변호사 특권이나 변호사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및/또는
  - (c) 피요청국에서 조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요청된 지원이 관련 사안들을 지연시키는 영향이 있는 경우 제외); 및/또는
  - (d) 요청당국의 형태 및 성격이 (민사, 행정, 법집행 등) 외국의 해당 당국과 상이할 경우.

#### 교환된 정보에 대한 보호장치

3. 교환된 정보는 요청 또는 제공 시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타당국 혹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시, 또는 본래 승인받은 목적 외의 행정적, 수사, 기소 또는 사법적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요청 권한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권한당국은 양측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및 데이터보호 의무에 따라 수사 또는

조사의 진실성을 보전하기 위해 공조 요청과 정보교환에 대한 적절한 비밀보장을 유지해야한다.

## 정보 탐색 권한

5. 권한당국은 외국 해당기관을 대신하여 조사를 할 수 있어야하며 이러한 조사가 국내에서 수행됐을 시 입수 가능했을 모든 정보를 해외해당기관과 교환하여야 한다.

## B. 특정 형태의 국제협력에 적용되는 원칙

6. 위의 일반원칙은, 아래 문단의 조건하에, 해당기관과 기타기관간의 모든 정보교환 유형에 적용되어야 한다

## FIU 간의 정보교환

7. FIU는 외국 FIU와 행정적, 법집행적, 사법적 혹은 기타 성격의 지위와 상관없이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FIU는 자금세탁·전제범죄·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공조 제공에 적합한 법적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공조 요청 시 FIU는 분석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 피요청국과의 잠재적 연관성 등 완벽한 사실정보와, 적절할 경우, 법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요청 시, 아울러 언제든지 가능할시, FIU는 제공된 정보의 활용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외국 해당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9. FIU는 다음을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 (a) FATF 권고사항, 특히 권고 29에 따라, FIU가 직간접적으로 접근 또는 입수할 수 있어야 하는 모든 정보와
  - (b) 상호주의 원칙하에 국내수준에서 직간접적으로 입수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그 외의 정보.

## 금융감독기관 간의 정보교환

10. 금융감독기관은 그 성격 또는 지위와 상관없이 외국 해당기관과 공조하여야 한

다. 금융감독기관 간의 효율적인 공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AML/CFT 감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국제기준과 일관되는 공조 제공, 특히 AML/CFT 목적과 연계되었거나 관련된 감독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11.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비롯한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의 필요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외국 해당기관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 특히 동 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간에는 AML/CFT 목적과 관련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정보 유형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a) 국내 규제체계에 대한 정보와 같은 규제정보와 금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 (b) 건전성 정보, 특히 Core Principle Supervisors에 관한 것;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영활동, 실소유자, 경영진, 적격성 등에 관한 정보.
  - (c) 금융기관의 내부 AML/CFT 절차 및 정책, CDD 정보, 고객 파일, 계좌와 거래 정보 샘플 등과 같은 AML/CFT 정보.
12. 금융감독기관은 외국 해당기관을 대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그룹 감독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 해당기관이 직접 관할권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절히 승인하거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3. 교환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용은 감독을 목적으로 한 경우 및 감독 목적이 아닌 경우 모두 요청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한 피요청 금융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 요청 금융감독기관은 최소한 피요청 당국에게 해당 의무사항에 대해 즉시 알려야 한다. 사전승인은 MOU 또는 다자간 MOU 하에 교환된 정보에 해당되는 MOU 또는 다자간 MOU 상의 사전승인간주조항을 포함한다.

## 법집행기관 간의 정보교환

14. 법집행기관은 국내에서 사용(입수)가능한 정보를 범죄수익·수단의 식별 및 추적을 비롯한 자금세탁, 전제범죄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범죄정보 혹은 수사 목적으로 외국 해당기관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5. 법집행기관은 또한 외국 해당기관을 대신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그들의 권한과 수사기법 등을 국내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집행공조에 적용되는 제도와 관례들(예, Interpol, Europol 또는

Eurojust와 각 국가 간의 협정)은 피요청 법집행기관이 가한 사용제한들을 규제하여야 한다.

16. 법집행기관은 공조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사팀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각국은 이러한 공조수사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맺어야 한다. 각국은 현행 AML/CFT 법집행 네트워크를 가입 및 지원하고, 신속·원활한 공조를 위해 연락담당자 해외 배치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양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기관 간의 정보교환

17. 각국은 앞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한당국이 기타기관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간접적 정보교환이란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국으로부터 피요청 당국에 도달하기까지 국내외 당국을 하나 이상 통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보교환과 정보의 사용은 피요청국의 권한당국 하나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당국은 어떤 목적과 누구를 대신하여 요청이 이루어지는지 항상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8. 각국은 또한 기타기관들과 직접적으로 신속하고 건설적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 장려된다.